

P92 | 2007. 11.

#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 동 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이 동 필    선임연구위원    연구 총괄

## 머 리 말

---

농산물 시장개방의 진전과 함께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민속주나 농민주산업을 활성화 시키자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좋은 기후와 수려한 국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통주류가 발전해 왔다. 그러나 1907년 주세령이 공포된 이래 주종이 약주·탁주·소주 등으로 단순화 되었으며, 1917년에는 자가양조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대부분의 전통주류가 사라지게 되었다.

지난 1986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민속주 기능보유자를 지정하였고, 1993년에는 주류분야의 전통식품 명인이나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주류를 제조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추천 하에 비교적 쉽게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는 민속주 및 농민주 추천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민속주 및 농민주 업체가 200여개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대부분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이나 경영능력이 취약하여 아직까지 산업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육성은 원료농산물의 소비증대와 수입주류의 대체, 전통문화의 복원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쌀과 잡곡, 과일 등 우리 농산물로 빚은 민속주의 재현을 통해 개방여파로 남아 도는 농산물의 소비를 증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축제나 관광·예술 등과 결합한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이 될 수 있고 전통 식문화를 계승·발전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이 연구는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실태와 문제,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살펴 본 것으로, 이 분야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07.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 요 약

---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육성은 우리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부가가치 증대는 물론 전통식문화의 계승과 농촌관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좋은 원료와 양조기술을 가지고도 해마다 4억 불이 넘는 엄청난 양의 주류를 수입해서 소비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주류산업을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 연구는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류의 제조 및 유통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업체에 대한 주세 차등화를 위해 「주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주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류제조방법을 다양화하고 제조허가에 필요한 시설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국에 산재하여 소량 생산하는 민속주와 농민주의 판로개척을 위해 통신판매 취급기관을 기존의 우체국 외에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늘리고, 판매허용 물량을 확대하는 등 유통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해 주세를 차등화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시장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식품산업 육성이란 차원에서 안정적인 원료공급시스템의 구축과 양조용 원료를 생산하고, 민속주 및 농민주의 품질향상 및 판로개척을 위해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교육 및 훈련, 홍보 및 판매촉진이 필요하다. 영세한 사업체가 독자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속주및농민주산업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산업육성의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방치되고 있는 민속주 및 농민주의 지정과 지원, 사후 관리 등 산업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 ABSTRACT

## Policy Issues for the Promotion of Farm-made & Traditional Korean Liquor Industry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dentify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he farm-made and traditional Korean liquor (FTKL) industry, and to figure out promotional strategies of the industry. The development of the FTKL industry has various meanings such as saving foreign currency through substitution with Korean liquor, helping the stability of the food supply and demand, and increasing farm-household income by facilitating the domestic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Furthermore, the FTKL industry helps enhancing people's health with traditional food made of various domestic raw materials such as rice, fruit, medicinal herbs, etc. It also provides opportunities to succeed and develop traditional culture through this procedur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are recommended: (1) deregulation and policy reform in the fields of standardization and manufacturing methods, etc., for facilitating the market and vitalization of the private sector, (2) the development of the FTKL industry should be based on Korean agricultural products and traditional recipe, (3) tax reform is necessary; for example, the tax rate for low alcohol contained liquor and small businesses should be decreased for the purpose of people's health and promotion of the small FTKL industry, (4) law and administration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coordinate various issues and tasks accomplished by related institutions.

Based on the policy directions, the followings are recommended as revitalization schemes for the FTKL industry in Korea: (1) reform the Liquor Tax Law for the purpose of relaxing regulations on the entry and operation of the farmer's liquor and traditional folk liquor industry (A tax reduction scheme, in particular, was suggested for the promotion of the FTKL industry.), (2) provide integrated programs including research & development, advertisement, etc. to support the FTKL industry, (3) enact a Law for the Promotion of the FTKL industry, and (4) reform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nomination and management for the FTKL business.

Researcher: Lee, Dong-Phil

Research period: 2007. 1~2007. 10.

E-mail address: ldphil@krei.re.kr

## 차 례

---

### 제1장 서론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범위와 방법 ..... 3
3. 민속주 및 농민주의 개념과 산업육성의 의미 ..... 4
4. 선행연구의 검토결과 ..... 11

### 제2장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관련제도와 육성정책

1.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관련제도의 변천 ..... 16
2. 민속주 및 농민주 제조에 대한 면허절차와 시설기준 완화 ..... 18
3.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유통규제 완화 ..... 21
4.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주세감면 ..... 24
5.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 26

### 제3장 민속주 및 농민주의 실태와 문제

1.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실태 ..... 29
2.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문제 ..... 33

### 제4장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발전방향

1. 주류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 38
2.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발전방향 ..... 40

### 제5장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주정 및 민속주·농민주 사업허가를 위한 시설규제 완화 ..... 45
2. 제조방법의 다양화와 원료사용규제 완화 ..... 47

- 3. 민속주 및 농민주의 유통규제 완화 ..... 49
- 4.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주세 차등화 ..... 52
- 5. 양조용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 55
- 6.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홍보와 판매·촉진 ..... 59
- 7.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 61
- 8. 민속주 및 농민주의 품질관리와 표시제도 정비 ..... 63
- 9. 「민속주및농민주산업육성법」의 제정과 지원·관리체계 정비 ..... 67

**제6장 맺는말**

- 맺는말 ..... 71
- 참고 문헌 ..... 76

## 표 차 례

---

### 제1장

- 표 1- 1. 주류의 종류별 정의, 제조방법 및 세율 ..... 6
- 표 1- 2. 민속주 및 농민주의 지정근거 ..... 8
- 표 1- 3.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육성제도 관련 연구 실태 ..... 13

### 제2장

- 표 2- 1. 민속주 및 농민주 관련제도 정비추진 실태 ..... 17
- 표 2- 2. 일반주류 및 민속주·농민주의 제조면허 시설요건 ..... 19
- 표 2- 3. 주류판매업의 종류별 면허요건 ..... 22
- 표 2- 4. 우리나라의 주종별 주세체계 ..... 25
- 표 2- 5. 농림부의 ‘전통주산업육성대책’ 주요 내용 ..... 27

### 제3장

- 표 3- 1. 연도별 주류제조면허 업체수와 농민주 및 민속주업체 ..... 30
- 표 3- 2. 주류의 종류별 출고량 ..... 31
- 표 3- 3. 주류의 종류별 납세액 ..... 32
- 표 3- 4. 민속주 및 농민주의 규모별 분포 ..... 33
- 표 3- 5. 민속주 및 농민주 구입경험과 구입목적 ..... 35
- 표 3- 6. 소비자들이 민속주 및 농민주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 36
- 표 3- 7. 민속주 및 농민주 생산업체가 당면한 애로사항 ..... 37

### 제4장

- 표 4- 1.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41
- 표 4- 2.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적 과제 ..... 41



제5장

표 5- 1.	민속주 및 농민주의 제조면허 시설요건 비교 .....	46
표 5- 2.	주종별 주류제조자의 거래상대방 .....	50
표 5- 3.	선진 외국의 주세감면 사례 .....	53
표 5- 4.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주세체계 개선안 .....	54
표 5- 5.	주정생산 및 원료사용 실태 .....	56
표 5- 6.	외국의 주정생산 및 유통제도 .....	58
표 5- 7.	원산지호칭일본주 및 전통적 원산지호칭일본주 비교 .....	64
표 5- 8.	선진국의 주류 관련제도 및 추진체계 .....	69

## 그림 차례

---

### 제1장

- 그림 1-1. 우리나라 주류의 분류 ..... 5  
그림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우리술포럼’ 안내 ..... 14

### 제2장

- 그림 2-1. 민속주 및 농민주 등 특정주류의 유통경로 ..... 23

### 제4장

- 그림 4-1.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발전방향 ..... 42

# 제 1 장

---

## 서 론

###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좋은 기후와 수려한 국토,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다양한 전통 민속주가 발전하였다. 문헌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지방마다 많은 술들이 가양주(家釀酒) 형태로 존재하였으나 1907년 조선통감부의 「주세령」 공포 이후 1916년경에는 약주·탁주·소주·일본청주로 주종(酒種)을 단순화 하고, 업체별 최저생산량을 제한하는가하면 1917년에는 자가양조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대부분의 전통주가 사라지게 되었다<sup>1</sup>.

그 후 오랜 침묵기를 거쳐 80년대 중반부터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산업육성 및 전통문화의 계승보전이란 관점에서 ‘관광토속주’와 ‘민속주 기능보유자’가 지정되고, 이들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도록 주류제조면허를 허가하면서 전통 우리술 부활의 싹을 틔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국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고급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1990년에는 식량부족으로 과거 25년간 금지해

---

1 조선시대의 술 제조방법을 소개한 자료는 산가요록(1450년, 전순의) 52종, 수운잡방(1550년, 김수) 62종, 음식다미방(1670년, 인동장씨부인) 51종, 증보산림경제(1766년, 유중립) 46종, 임원경제지(1827년, 서유구) 171종 등이 있음(허시명, 실학과 술, 2006)

오던 쌀 막걸리 생산을 재개하였다. 1993년부터는 주류분야 전통식품명인이나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주류를 제조할 경우 농림부장관이 추천하여 비교적 쉽게 제조를 허가하는 ‘민속주 및 농민주 추천제도’가 도입되었고 1998년과 2000년에 걸친 두 차례의 주류분야 규제개혁으로 인해 진입장벽을 상당히 완화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주류부문은 제도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몇몇 중·저급 대형주류업체의 독과점적 산업구조로 인해 전통민속주 또는 지역특산물산업의 발전이 저해되고,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고급주류 소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구나 소주와 맥주 등 비록 국내에서 생산된 주류라고 하더라도 원료의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주류산업의 발전과 국내농업의 연결고리가 취약하다. 쌀과 과일 등 좋은 원료농산물은 남아도는데도 해마다 4억불 이상의 외국술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술산업의 현실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속주와 농민주산업의 육성은 원료농산물의 소비증대와 수입주류의 대체, 전통문화의 복원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쌀과 잡곡·과일·약초 등 우리 농산물로 빚은 민속주의 재현을 통해 개방여파로 인해 남아도는 농산물의 소비증대와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활성화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오랫동안 ‘손에서 손으로 전해 온 전통적 제조방법’에 의해 우리 입맛에 적합한 우리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을 재현하는 것은 서구화되는 음식문화에 대한 반성이란 차원에서 의의가 크다. 더구나 술은 지역축제나 관광, 예술 등과 결합한 고부가가치 문화상품이 될 수 있는 만큼 ‘5도(都) 2촌(村)시대’를 맞이하여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이나 농촌문화관광을 풍요롭게 하는 율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에서는 민속주와 농민주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들 특정주류의 육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와 그 타당성, 그리고 민속주 및 농민주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한 후에 이들 산업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 2. 연구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민속주와 농민주 산업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민속주와 농민주는 전통주, 토속주, 또는 우리술이란 용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간의 지적을 받아들여 「주세법」에서 정한 개념으로 한정하였다<sup>2</sup>. 이들 민속주와 농민주는 특정한 지역과 우리의 음식문화, 그리고 국산원료에 기반을 둔 영세한 주류업체란 점에서, 그리고 그린투어리즘이나 향토문화산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지역개발 수단으로 주목을 받아 왔다.

정부에서 주류산업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구체적인 실태와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출고량이나 납세액 자료를 기초로 유추할 때 주종별로는 약주와 과실주, 리큐르, 그리고 증류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가계와 경영이 미분리된 전근대적인 경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실태분석은 크게 관련제도 검토, 산업에 관한 기초자료의 분석,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의사조사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관련제도의 경우 「주세법」과 「주세사무처리규정」, 그밖에 농민주와 민속주의 지정 및 관리제도, 「식품위생법」과 「식품공전」의 원료사용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의 지원규정 등 국내외 관련제도를 검토하여 민속주 및 농민주 산업발전을 위한 지나친 규제나 미흡한 정책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통계자료는 ‘국세통계연보’에서 제조업체수와 출고량, 납세액에 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며, ‘무역통계’에서 주종별 수출입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부분적으로나마 주류소비에 관한 자료를 ‘식품유통연감’과 ‘도시가계연보’ 등에서 얻을 수 있는데 이들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산업의 개략적인 실태를 파악하였다. 민속주 및 농민

2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상 탁주·약주·청주와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해 특정주류도매면허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이들을 특정주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편의상 민속주와 농민주를 전통주로 구분하기도 함

주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실태는 200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와 2006년 농림부와 농산물유통공사의 정부지원 농산물가공공장 조사결과를 재분석하여 활용하였다.

### 3. 민속주 및 농민주의 개념과 산업육성의 의미

최근 웰빙 붐과 함께 전통적인 제조방법과 국산원료로 만든 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술을 외국술에 대응한 개념으로 ‘우리술’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현대적인 시설과 제조방법, 외국산 원료 등을 이용한 일반주류와 차별화하기 위해 ‘민속주’, ‘전통주’, 또는 ‘전통민속주’란 용어를, 그리고 이러한 술이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제조방법, 역사와 문화 등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텃술’, ‘관광토속주’ 또는 ‘지역특산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별도로 관리하는 ‘농민주’라는 개념도 사용하고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주세법』상 주류는 “주정(酒精)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주류”로 정의하는데, 주류의 종류는 발효주류(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증류주류(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로 구분(법 제4조)하고, 종류별로 각기 규격과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방법, 세율 등을 설정하고 있다. 『주세법』 체계상 별도의 법에 의해 제조허가를 한 민속주와 농민주에 대해 주류의 판매허가에 필요한 시설이나 유통규제, 그리고 주세에 있어서 일반주류와 차등화 하고 있다. 즉 민속주와 농민주에 대한 규정은 『주세법시행령』 제9조(특정주류도매업)에서 ①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농민주), ②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 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시·광역시동지정문

화제)가 추천하는 주류(민속주), ③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민속주)는 탁주·약주·청주와 함께 ‘특정주류’라는 별도의 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다.

흔히 전통주, 또는 전통민속주라고 할 때는 제조방법상 전통적인 기술과 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현행 법체계상 민속주와 같은 개념인 ②와 ③의 범주에 속하는 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농민주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하는 술이란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민속주가 전통주 제조기술의 발굴과 계승·발전에 초점을 맞추는데 비해 농민주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농가소득원 개발에 관심이 있다.

그림 1-1. 우리나라 주류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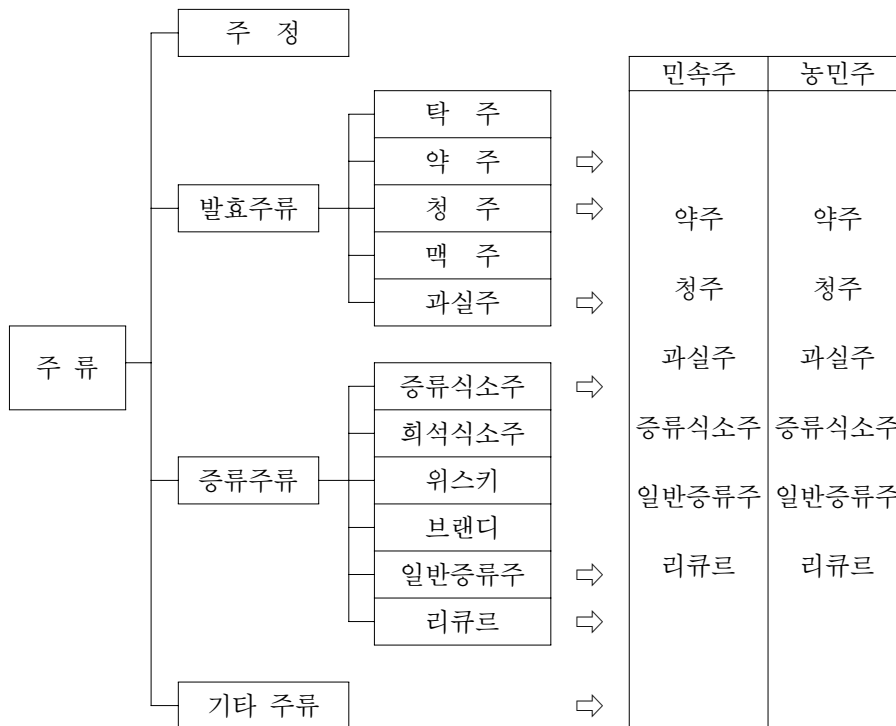


표 1-1. 주류의 종류별 정의, 제조방법 및 세율

구분	정의(원료 및 제조방법)	주세
주정	(1) 전분 또는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알코올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57000 원/kl
탄주	(1) 곡류와 곡,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상동) (2) 곡류 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곡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상동) (3) 곡류, 곡류 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곡,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상동) (4) (1)-(3)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상동) (5) (1)-(4)에서 규정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5/100
양주	(1) 곡류와 곡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2) 곡류 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곡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상동) (3) 곡류, 곡류 외의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곡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상동) (4) (1)-(3)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한 것 (5) (1)-(4)에서 규정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30/100
백미주	(1) 곡류 중 쌀(찬쌀 포함)·곡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발효·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2) 위의 규정에 의한 쌀·곡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제성한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코올분의 도수범위 안의 것	30/100
맥주	(1) 엿기름·홉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제성한 것 (2) 엿기름과 홉,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전분·당분 또는 캐러멜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제성한 것 (3) (1)-(2)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도록 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코올분의 범위 안의 것	72/100
과실주	(1)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제성하거나 (상동) (3) (1)-(2)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도록 하여 제성한 것 (4) (1)-(2)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5) (1)-(4)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코올분의 도수범위 안의 것 (6) (1)-(5)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30/100 (농미주 15/100)
증류식소주	(1)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 곡과 물을 원료로 발효시켜 연속식 증류 외의 방법에 의해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순으로 여과한 것을 제외 (2) 위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한 물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곡물 주정을 혼합한 것 (4) (1)-(3)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72/100
희석식소주	(1)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2)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3) (1) 또는 (2)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한 물료를 첨가한 것 (4) (1)-(3)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류식소주를 혼합한 것 (5) (1)-(4) 규정에 의한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72/100
위스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 규정에 의한 주류를 혼합한 것 (4) (1)-(3)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72/100
브랜디	(1) 위에서 규정한 과실주(과실주지계미 포함)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위의 규정에 의한 주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 또는 물료를 혼합하여 첨가한 것	72/100
일발증류주	(1) 수수 또는 옥수수, 기타 전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와 곡을 원료로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부수, 설탕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것을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 또는 기타 알코올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약재를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술덧 또는 기타 알콜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순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 이상의 주류중 제1호, 3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를 제외한 것	72/100
리큐르	제4조제3항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72/100
기타주류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 발효방법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 규정의 것 등	-



여기서 ‘민속주’란 ①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시·도 지정문화재에 한함)가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19종)”, ②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20종), 그리고 ③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취득한 주류(4종), ④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18종)가 여기에 해당된다. 건교부와 제주도가 지정한 민속주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이미 종료되었고, 문화재청의 민속주도 1986년 11월 중요 무형문화재를 지정한 이래 추가로 지정한 실적이 없어서 장차 민속주산업은 결국 농림부의 ‘전통식품명인’을 중심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의 전통식품명인은 ① 당해 전통식품의 조리 가공에 관한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조상 전래의 특별한 전통식품의 조리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당해 전통식품 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다. 2007년 현재 28명(주류 20명)을 지정하였으나 그중 25명(주류 18명)이 활동 중이다.

『주세법』 체계에서는 이들 ‘민속주’에 대해 제조 및 판매 면허시 시설기준이나 유통규제 완화 등의 유사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민속주라 하더라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관리청이 지정·관리하는 민속주의 경우 중요무형문화재 보호·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데 비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농림부가 관리하는 전통식품명인 중에 지정된 민속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없다는 소위 형평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sup>3</sup>. 더구나 ‘민속주’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란 취지로 주류제조분야의 특정한 전통 제조방법과 기술을 가진 개인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일

3 예를 들어 문화재청의 기능보유자로 지정되면 매월 70~100만 원씩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을 지원받고, 의료보험혜택과 사망시 100만 원의 위로금도 지급되지만 전통식품명인은 이러한 지원혜택이 전혀 없음

신 전속적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천두견주’와 같이 기능보유자의 사망시 해당 민속주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 더구나 민속주의 지정시 전통적인 제조방법과 국산원료 이용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서 이들 민속주의 시장경쟁력을 떨어뜨려 산업화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2. 민속주 및 농민주의 지정근거

구 분	개념 및 근거법	지정실태	
농 민 주	“농림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선운산복분자주, 감악산머루주, 진도홍주 등)”를 의미하는데 [주세법시행령] 제9조 2항의 규정을 근거로 농림부의 [농업인등생산자단체및민속주명인에대한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추천하고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188	
민 속 주	문화재청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시·도 지정문화재에 한함)가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예: 문배주, 이강주, 과하주 등)”	19 (국가 3, 지자체 16)
	농림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傳統食品名人)중에서 농림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청송불로주 등)	20
	제주도	1999년 2월 5일 이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취득한 주류(오메기술 등)	4
	건교부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관광토속주(함양국화주, 문경호산춘 등)	18

주: 지정실태는 2005년 말 자료임

한편 ‘농민주’란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림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주류”를 의미하는데, 농민주의 근거는 「주세법시행령」 제9조 2항(주류판매업 면허규정)에 따라 특정주류도매업의 대상으로 ① 발효주류 중 탁주·약주 및 청주 ②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임업인,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③ 전통문화의 전수·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천하는 주류, ④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라고 명시한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1993년부터 농업인 등의 주류제조업 참여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② 및 ④에 기초하여 농림부가 「농업인등·생산자단체 및 민속주명인에 대한 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농림부고시 2003-9)」을 제정하고 사업희망자에 대해 농림부장관이 제조면허를 추천하고 있다.

농림부장관 추천제도는 주류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요건을 완화하여 손쉽게 주류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생산한 술은 특정주류에 포함하여 거래상대방 제한을 완화하고 우편판매 등의 특혜와 자금지원 혜택을 주고 있어서 소규모 자본을 가진 농산물생산자 등이 쉽게 주류산업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주세법시행령」의 농민주 관련 조항은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대상을 규정한 것이며, 「주세법」상 농민주에 대한 근거가 취약한 규정으로 농민주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취급상황을 보여준다 하겠다<sup>4</sup>. 농림부의 「농업인등·생산자단체 및 민속주명인에 대한 주류제조면허추천요

4 국세청은 2003년 8월 1일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4조(농민주생산자단체주류)를 신설하여 ①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는 농림부장관 추천요건인 주류원료의 50% 이상을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농민생산자단체주류 제조자가 농림부장관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국세청장은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농림부장관의 처리결과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문화하고 있음

령(농림부고시 2003-9)」은 추천대상자를 ①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의 50% 이상을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② 「농산물가공업육성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부문의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자로 설정(제3조)하고 추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추천의 법적근거나 우선순위 결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국세청과 업무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체계적인 지정,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속주 및 농민주는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전통 제조방법으로 만든 우리 체질에 맞는 술이란 점에서 ‘우리 입맛에 맞는 좋은 우리 술’의 소비를 통한 국민건강 유지와 국산 원료농산물의 소비촉진, 농가의 소득증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입주류의 대체와 수출 증대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민속주 및 농민주가 가진 장점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문의한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전통술의 장점이 무엇이나?”란 질문에 ‘우리 고유의 술이란 자부심(67.6%)’, ‘건강에 좋은 술이란 점(42.9%)’, ‘원료가 우리농산물이란 점(39.5%)’, ‘우리 체질에 맞는 술이란 점(31.6%)’, ‘믿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다는 점(10.7%)’, ‘수출 증대와 수입대체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6.5%)’ 등을 들고 있다(이동필외, 농민주 및 민속주산업 발전방안과 개발모델, 2005).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발전은 결국 국산농산물을 활용하는 농민주와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지키는 민속주업체 그리고 지역특산주를 육성하는 것으로, 국산 원료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적인 제조방법, 그리고 지역의 고유한 향토음식문화를 바탕으로 전통술을 빚어 판매하여 쌀과 보리 등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up>5</sup>. 그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양조란 새로운 사업에

5 연간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주정 150D/M에 쌀을 사용한다면 그 소요량은 약 663,000톤(주정 1D/M 생산에 쌀 442kg 소요)에 달한다(배상면, 21세기 우리나라 전통주가 나아갈 방향, p.15, 2006.2.17). 특히 40도 전통술 한잔(50ml)에 쌀 70g(2005년도 국민 1인당 한 끼 평균 소비량은 74.9g)으로 안동소주 한잔이면 밥 한공기와

참여함으로써 고용기회의 창출과 관광, 지역축제 등 다양한 2·3차 산업과 결합을 통해 농산물생산의 부가가치와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다. 이밖에도 전통민속주나 지역특산주와 같은 우리 술, 그 중에서도 약주와 과실주 등 다양한 저도주의 생산과 이를 바탕으로 가양주 문화를 재건함으로써 외화획득과 함께 국민건강과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 4. 선행연구의 검토결과

주류산업에 관한 연구는 소비자들의 구매행동분석과 주류유통, 그리고 산업 정책에 관한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소비자들의 주류제품에 대한 구매행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에는 ‘주류제품 구매에 관한 소비자행동 연구(김춘식, 1984)’를 비롯하여 ‘주류에 대한 소비자의식에 관한 통계학적 연구(송진택, 1990)’, ‘우리나라 맥주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강태윤, 1994)’, ‘소주소비자의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안광중, 2001)’ 등이 그것이다.

유통과 관련된 연구로는 ‘우리나라 주류유통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강현중, 1992)’과 ‘주류산업의 환경변화와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유대회, 1990)’, ‘국내 저도주제품의 시장도입기에서 전략에 관한 연구(이석우, 1990)’, ‘주류업체 수·배송관리 전산화에 관한 연구(정풍언, 1995)’ 등이 있으며 이 밖에 주류 불법유통 문제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주류유통시스템의 개선방안(손성기, 2002)’와 수입주류와의 차별화를 위한 ‘수입주류가 우리나라 주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엄선흠, 1991)’과 ‘포천막걸리에 대한 지리적 연구(차현

---

맛먹는다고 함. 따라서 국내 주정소비량(3천만 리터)를 쌀로 생산할 경우 66만 3천 톤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나라 쌀 생산량의 13%에 해당하는 양이 됨

호, 1999)’ 등이 있다.

주류 수요예측에 관한 연구로는 ‘우리나라 와인수요 예측에 관한 연구(방진식, 2001)’와 ‘도시가계의 주류수요 분석에 관한 연구(이성윤, 2003)’, ‘주류수요의 특성분석(김현미, 2003)’ 등과 ‘한국 복분자산업의 현황분석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반옥성, 2003)’와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배성태, 2003)’ 등이 있으며 이 밖에 강신일(1988), 서희열(2001), 성명재(1999) 등에 의해 주류제도 및 조세정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는 대부분 주류산업 일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민속주와 농민주의 실태파악이나 대책수립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전통민속주에 관한 초기연구로는 ‘전통가공식품 육성방안(이동필외, 1994)’이 있으며, ‘전통민속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동필, 1994)’은 그 중 안동소주를 사례분석하여 규제완화와 홍보 및 판매촉진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국무조정실에서 의뢰한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농촌부문의 규제개혁 구상(이동필외, 2000)’에서는 주류제조 및 유통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듬해 ‘농림부문 2단계 규제정비 방안(이동필외, 2001)’ 연구를 통해 포도주 등 농업인의 생산주류 산업화를 위한 규제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002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농민신문사가 공동으로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주류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세미나(2.18)’를 개최하고 ‘선진국의 주류생산 및 유통관련 제도와 시사점(정헌배)’, ‘일본 토카치와인 이야기(가와구치 마사노리)’,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 과제(이동필)’ 등의 발표가 있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전국포도협회 주관으로 ‘포도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프랑스 포도주산업과 시사점(이동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2003년에도 농민신문사와 함께 ‘농가포도주 및 민속주산업육성을 위한 세미나(2.18)’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는 ‘전통민속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 실태와 정책과제(이동필)’, ‘외국산 포도즙 수입증가의 원인과 국내생산농가의 시장확대 대책(김성수)’, ‘외국의 농민주 산업육성 실태와 시사점(정헌배)’ 등 주제발표를 통해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육성을 위한 정책대안을 거듭 제시하였다.

표 1-3.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육성제도 관련 연구 실태

연도	주요 연구 및 세미나발표	비 고
1993	○ 전통가공식품육성방안(KREI, 이동필 외)	농림부장관 면허추천제
1994	○ 전통민속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이동필)	
1997	○ 포도산업육성토론회(포도가공협의회) - 포도를 이용한 얼굴 있는 상품개발(이동필)	
1998		제1차주류분야 규제개혁
2000	○ 지식사회구현을 위한 규제개혁(국무조정실) - 주류의 제조 및 유통관련 규제 정비(이동필 외)	제2차주류분야 규제개혁
2001	○ 농림부 2단계 규제정비방안(국무조정실) - 포도주 생산 및 유통관련 규제정비(이동필 외)	- 제조방법 및 제품규격 기준 정비
2002	○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주류산업활성화(농민신문) - 선진국주류생산 및 유통관련 제도와 시사점(정헌배) - 일본 토카치와인 이야기(가와구치 마사노리) -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제도개선과제(이동필) ○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KREI, 이동필 외) ○ 포도주산업 활성화 토론회(전국포도협의회) - 프랑스 포도주산업과 그 시사점(이동필)	- 농민주 시설기준 완화 - 탁주, 약주, 청주알코올도수 폐지
2003	○ 농가 포도주·민속주산업 육성을 위한 세미나(농민신문) - 전통민속주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정비실태와 정책과제(이동필) - 외국산 포도주 수입증가 원인과 국내생산농가의 시장 확대 대책(김성수) - 외국의 농민주산업 육성실태와 시사점(정헌배)	- 우체국을 이용한 통신 판매 확대 - 포도 등 과일을 중량 기준 20% 범위내에서 탁주원료사용 허용 - 전통주소득 1200만 원 까지 소득세 비과세
2004	○ 농민주 및 민속주산업 발전방안(KREI, 이동필 외) ○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KREI, 유통공사) - 외국의 농가 및 소규모 주류생산자 지원제도와 시사점(정헌배) - 우리술산업의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이동필)	- 과실주 주세감면 주세 법개정안(안택수) - 전통민속주산업육성법 개정안(이상배)
2005	○ 전통민속주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농민주중 200kl미만 과실주 주세 50%감면
2006	○ 전통술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세미나(이상배의원실) - 농민주 및 민속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이동필) ○ 한국전통식품의 세계화전략 세미나(한국식품영양학회) - 전통우리술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과제(이동필) ○ 우리농산물 가치재발견과 소비촉진토론(강기갑의원실) - 농산물소비촉진을 위한 전통술산업육성방안(이동필) ○ 혁신박람회에서 우리술산업 활성화 토론회(농특위) - 전통우리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이동필) - 선진국 주류산업정책과 시사점(정철)	- 주세법개정안(송영길) - 전통민속주산업 육성 대책 발표(농림부)
2007	○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과제 추진(농특위)	- 주류분야 규제개혁안 발표(규개위)

2004년에는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연구비지원으로 ‘농민주 및 민속주산업 발전방안과 개발모델(이동필 외, 2005)’이란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민속주와 농민주 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주요결과를 ‘우리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12.22)’를 통해 공개하였다. 때 마침 안덕수의원 등의 주세감면 제안과 이상배의원의 「전통민속주산업육성지원법률」 제정 등 일련의 제도개선 움직임이 있었으나, 농민들이 생산한 과실주 중 일정규모 이하 업체에 대한 주세 50% 감면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하고 여전히 지리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2006년에는 농어민신문사와 이상배의원실이 공동개최한 ‘전통술산업 현황과 육성방안에 관한 세미나(1.17)’가 있었으며, 한국식품영양과학회가 개최한 ‘전통술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과제(3.23)’, 고려대 의대와 강기갑의원실이 공동

그림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우리술포럼’ 안내





주최한 ‘우리농산물의 가치 재발견과 소비촉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4.4)’, 그리고 지역혁신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술산업 활성화 토론회(11.7)’에서도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정비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연구는 2004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포럼에 설치·운영 중인 ‘우리술카페(<http://agre.krei.re.kr/forum>)’에 축적된 자료와 ‘농민주 및 민속주산업 발전방안과 개발모델(2005)’을 기초로 농특위의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추가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관련제도에 대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종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제 2 장

###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관련제도와 육성정책

#### 1.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관련제도의 변천

주류는 알코올 중독이나 음주사고 등 국민보건과 건강에도 깊게 관련이 있는 만큼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정부의 인·허가 규제와 조세정책을 통해 생산과 소비를 통제해 왔다. 하지만 민속주와 농민주가 갖는 다양한 의미 때문에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세 차등화나 별도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6년 음식(주류)분야의 무형문화재를 민속주로 지정하는가하면 1993년부터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전통식품명인(주류분야)이나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술을 제조할 때 이를 민속주 또는 농민주로 허가하여 제조 및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특히 WTO체제의 확립 등 개방이 진전되면서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요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높아지자 1998년부터는 대대적인 주류분야의 규제 완화를 실시하게 되었다. 당시 「주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 4개 분야 19개의 규제를 정비하여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주류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정부의 개입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를 시장질서로 대체하는 제도정비를 실시하였다.

그 후에도 주류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수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2002년에는 민속주 및 농민주의 시설기준을 면적기준으로 대체하고, 탁·약주 등에 대한 알코올도수 규제를 폐지하여 다양한 주류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2003년에도 예외적으로 민속주 및 농민주에 한정해서 인정하던 통신판매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탁주제조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는 농민주 중 200kl미만의 과실주에 대해 주세를 50% 감면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표 2-1. 민속주 및 농민주 관련제도 정비추진 실태

연도	주요 규제정비 내용
1993	- 농림부장관 추천에 의한 농민주 및 민속주허가제도 신설
1998	- 민속주 및 농민주 제조업면허요건에서 시설규모 완화 - 특정주류도매면허제도 도입 - 5kl 미만의 영세업체에 대해 거래상대방제한 폐지 - 농민주 및 민속주는 1회 5병 내에서 우체국을 통한 통신판매 허용
1999	- 증류주 주세율을 100%에서 72%로 인하
2000	- 소규모 맥주제조면허제도(Micro Brew) 도입
2001	- 주류제조방법 및 제품규격과 품질에 관한 규제정비 - 청주의 주세율을 70%에서 30%로 인하 - 5kl 미만에 한정된 거래상대방 제한을 전체 농민주 및 민속주에 확대 적용
2002	- 농민주의 허가시설 요건을 최소면적으로 추가 완화(국실 9m <sup>2</sup> ⇒6m <sup>2</sup> , 담금실 2m <sup>2</sup> → 10m <sup>2</sup> , 증류실 15m <sup>2</sup> → 8m <sup>2</sup> ) - 탁주(3도 이상), 약주(13도 이상), 청주(14도 이상)의 알코올도수 제한 폐지
2003	- 우체국 통신판매 허용규모를 5병에서 20병(명절 20일 전은 50병)까지 확대 - 포도 등 과실을 중량기준 20% 범위 내에서 탁주원료로 사용 허용 - 전통주 판매에서 발생하는 농가소득에 대해 연 1,200만 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2005	- 농민주 중 일정규모(200kl)미만 과일주에 대해 주세 50% 감면(30%→15%)
2006	- 무자료거래 방지를 위한 주류용도구분표시제도에서 민속주와 농민주는 제외 - 수입주류도매면허자도 전통술(민속주 및 농민주)판매 허용 - 전통민속주산업 육성대책(농림부)

하지만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의 임시방편적이고 예외적인 접근으로는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2006년 「전통민속주산업육성지원법률안」이 제안되었으나 관계 부처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주세감면을 위한 「주세법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밖에도 2006년 9월에는 농림부가 ‘전통술산업 육성 추진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07년 2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주류분야의 규제정비를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지난 6월 국세청과 농진청은 각기 ‘전통주산업육성지원센터’와 ‘양조식품연구동’을 개설하였는가 하면 지난 10월에는 농진청과 국세청, 그리고 농림부까지 제각기 전통주 시음회와 품평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원 및 관리체계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는 2006년부터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과제로 선정, 관련업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 2. 민속주 및 농민주 제조에 대한 면허절차와 시설기준 완화

주류제조업의 경우 주종 및 제조장별로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수준의 설비를 갖추고 정해진 제조방법에 따라 제조하여, 주류검정을 받고 유통하도록 되어 있다. 즉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장별 시설기준 및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주세법」 제6조)’ 한다. 예를 들어 청주의 경우 15kl 이상의 담금조와 45kl 이상의 저장조를, 과실주는 각기 42kl 이상의 담금조와 45kl 이상의 저장조를, 증류식소주는 12kl 이상의 담금조와 50kl 이상의 저장조, 1kl 이상의 증류기를 갖추고 그 밖에 현미경이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의 실험시설을 구비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주세법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 이와 같은 시설기준은 전체적으로 주질을 향상시키고 주류산업을 규모화 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은 영세하지만 기술이나 원료를 가진 잠재적 사업자들의 진입을 저해하는 장

벽으로 작용하여 주류산업의 독과점화를 고착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93년 UR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국산 농산물의 새로운 소비처를 찾던 정부는 마침내 농림부장관이 추천해서 비교적 쉽게 주류제조면허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주류분야의 ‘전통식품명인’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음식(주류)분야의 무형문화재와 같은 민속주생산자로 인정하고, 농·임업인과 생산자단체가 50% 이상 자가생산한 주원료를 사용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할 경우 이를 ‘농민주’라 하여 이들 민속주와 농민주는 일반주류에 비해 제조 및 유통규제를 완화해 주게 되었다(「주세사무처리규정」 제44조). 이 제도에 의하면 민속주와 농민주는 완화된 시설기준을 적용받는 외에도 제조 및 판매장의 승인을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는 일반주류와 차별화 하였다(「주세사무처리규정」 제4조).

표 2-2. 일반주류 및 민속주·농민주의 제조면허 시설요건

주 종	일반주류	민속주 및 농민주
주 정	발효조 총용량 550kl 이상	-
탁·약주	- 밀술조: 60l 이상 - 발효조: 6,000l 이상 - 제성조: 7,200l 이상	- 국실: 6m <sup>2</sup> 이상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담금실: 10m <sup>2</sup> 이상 (밀술실, 제성실, 저장실 포함) - 증류실: 8m <sup>2</sup> 이상 (발효주 제외) * 단, 농민주 담금실은 과실주는 20m <sup>2</sup> , 증류식 소주는 25m <sup>2</sup> 이상
청 주	- 담금조: 15kl 이상 - 저장 및 검정조: 45kl 이상	
과실주	- 담금조: 42kl 이상 - 저장 및 검정조: 45kl 이상	
증류식소주	- 담금조: 12kl 이상 - 저장 및 검정조: 50kl 이상 - 증류기: 1kl 이상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담금조: 155kl 이상 - 저장 및 검정조: 50kl 이상 - 증류기: 0.7kl 이상	

자료: 「주세법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 2007

이와 함께 민속주와 농민주 제조면허를 허용할 때 일반주류에 비해 시설요건을 완화한 것은 실제 사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주류산업의 지나친 규제에 대한 오랜 논란 끝에 1998년 주류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단행하게 되었다. 특히 농민주의 경우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상당한 배려를 해 오던 민속주에 대한 규제수준에 맞추어 공정별 시설의 최저용량 대신에 최소한의 제조장면적 기준만 설정하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던 요인을 완화하여 주류제조업 참여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추게 된 것이다. 하지만 민속주 및 농민주 업체의 경우 워낙 규모가 영세하여 지난 몇 차례의 시설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설요건 때문에 사업참여를 제한받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특정주류에 속하는 과실주라 하더라도 민속주의 경우 밀술실과 제성실을 포함한  $10\text{m}^2$  이상의 담금실이 있으면 되는데 비해 농민주에 대해서는  $20\text{m}^2$  이상을 요구하는 등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국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많은 나라가 종류별 면허제도를 가지고 주류의 유통과 주세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포도주나 맥주와 같은 발효주 제조면허시 의무적인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설정하지 않고 주류제조에 사용되는 시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독일의 주정제조면허시와 영국의 증류주제조면허시 품질관리와 세원확보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시설요건을 두고 있다(정헌배, 선진국의 주류생산 및 유통관련 제도와 시사점, 2002).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등과 같이 아예 주류제조 면허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도 있는가 하면, 많은 나라가 제조시설을 단지 신고사항으로 운용하고 있어서(서현수,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 2001) 우리나라의 민속주와 농민주에 대한 차별적인 면허제도의 도입이나 제조시설요건의 완화가 국제규범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와 같은 별도의 면허체계가 이들 산업의 육성수단으로서 제대로 작동하느냐 하는 점과 이렇게 완화된 시설기준이 실제 민속주와 농민주 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 3.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유통규제 완화

주류판매는 제조와 마찬가지로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주세법』 제8조), 직매장의 설치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주세법』 제17조). 즉 주류는 주정과 일반주류, 특정주류, 그리고 수입주류로 대별되는데 이들 주류는 유흥음식점용과 가정용으로 구분되어 판매업 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유통경로가 지정되어 있다.

민속주와 농민주는 탁·약주 등과 함께 특정주류에 속하는데, 이들 주류를 판매하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하여 자체적인 홍보는 물론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1998년 제1차 주류분야 규제개혁시 판로가 취약한 영세주류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탁·약주나 민속주, 농민주와 같은 특정주류를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을 제도화하고, 이들에 대해 시설 및 자본금 규제를 완화하였다. 즉 일반주류를 취급하는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 면허신청인의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인구 50만 이상 시는 1억 원 이상), 창고면적은 66㎡ 이상(인구 50만 이상 시는 165㎡ 이상)이어야 하며,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속주와 농민주 등을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업은 자본금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창고면적도 종합주류도매업의 20%에 불과한 33㎡ 이상으로 대폭 완화하는 특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특정주류를 취급하는 도매업체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민속주 및 농민주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한편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필요한 시설요건은 대지 500㎡, 창고 3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주세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하지만 민속주와 농민주의 경우 영 제17조 제1항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면허할 수 있도록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표 2-3. 주류판매업의 종류별 면허요건

구 분	특정주류도매업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수출입업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	-인구50만 이상 시: 1억 원 이상 -기타지역: 5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창고 면적	-33m <sup>2</sup> 이상	-인구50만 이상 시: 165m <sup>2</sup> -기타 지역: 66m <sup>2</sup> 이상	-66m <sup>2</sup> 이상
기타 요건	-저장용기 및 방충설 비를 갖추는 것	-주류종합도매업만을 전업할 것	-주류수입업만 전업으로 할 것
직매장 설치	-일반주류제조업체에 적용하는 기준 배제	-일반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직매장 설치시 대지 500m <sup>2</sup> , 창고 300m <sup>2</sup> 이상	-해당사항 없음

자료: 「주세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5 및 동시행령 17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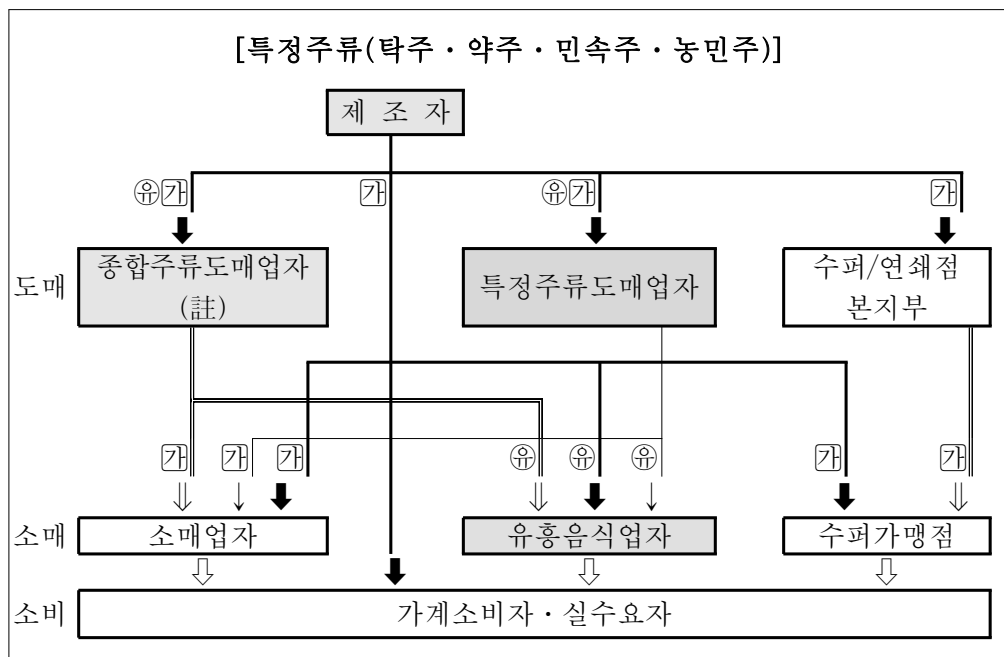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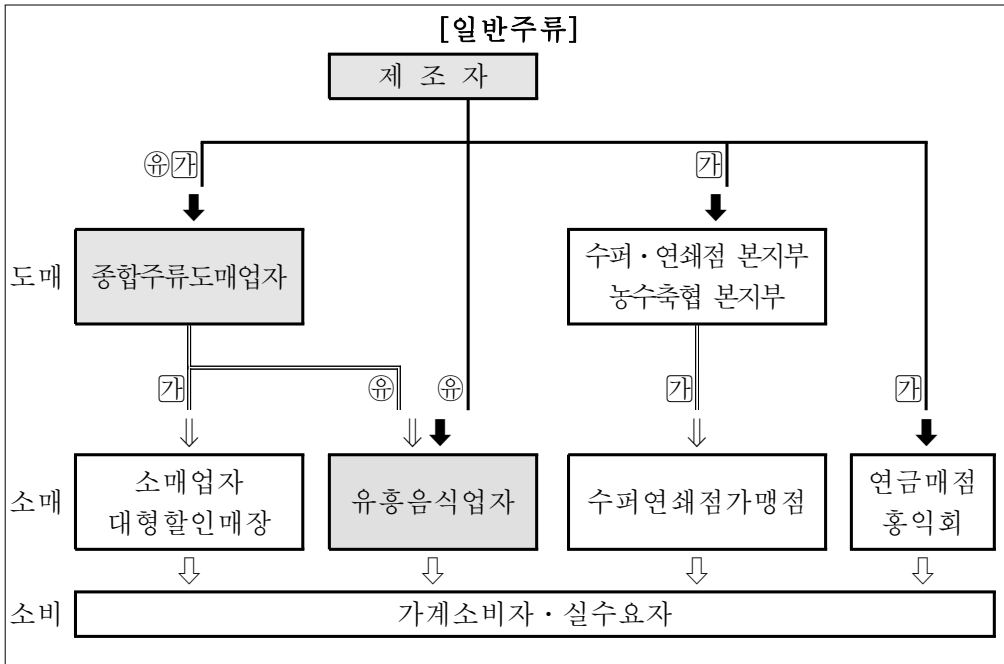
한편 주류판매업의 종류와 주류의 용도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지정하고 있는데 일반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술을 구매하여 유통 음식점용은 유통음식업자에게만, 가정용은 소매업자(슈퍼·연쇄점가맹점 제외)와 의제판매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슈퍼 및 연쇄점 본지부(중개업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가정용 술을 구매하여 소속가맹점 및 직영점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즉 제조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슈퍼·연쇄점·농수협 본지부에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민속주와 농민주를 포함한 특정주류제조자는 <그림 2-1>의 아랫부분과 같이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슈퍼 및 연쇄점 본지부는 물론 특정주류도매업자와 유통음식업자, 소매업자,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주세사무처리규정」 제68조).

이와 같은 유통상의 특례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정주류도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민속주 및 농민주가 그렇게 많지 않고 소매업자는 물론 개별 소비자에게까지 직접적인 유통을 허용하였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은 규모가 영세하여 독자적인 판매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림 2-1. 민속주 및 농민주 등 특정주류의 유통경로

⊕ : 유흥음식점용    ⊞ : 가정용



이 밖에도 민속주 및 농민주의 경우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1인 1회 20명 이하(추석 및 설날 전 20일내에는 50명 이하)로 판매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해 줌으로써 민속주 및 농민주 업체의 판로문제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통신판매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상표에 “통신판매용,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이라고 표기하고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비치, 관리하도록 되어있다(『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아울러 인터넷을 포함한 우편판매제도는 선진국에서 널리 활용되는 유통경로인데(정헌배, 전게서, p.21, 2002), 특히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나라 민속주 및 농민주 업체에게는 중요한 유통채널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확대를 주장하는 측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4.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주세감면

주류제조자는 주종별로 정해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주세법』 제21조 및 22조). 주종별 주세는 탁주(5%)와 맥주(72%)를 제외한 약주·청주 등 발효주는 30%,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는 72%이고, 주정은 kl당 5만 7천 원으로 정해져 있다. 주류에는 이 밖에도 출고량과 세율에 따라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주류제조업체, 그중에서도 규모가 영세한 민속주와 농민주 업체에게는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그동안 관련업계와 전문가들이 민속주 및 농민주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국민경제나 소비자들의 건강보호, 그리고 농가경제 안정과 건전한 음식문화의 계승발전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주장 끝에 2005년 1월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농어인·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과실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감면(『주세법』 제22조)하게 되었다. 여기서 소규모 농업인의 범위는 ① 직전 주조연도

의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류 중 과실주를 500kl 이하로 제조한 자, ② 당해 주조연도에 제9조제2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과실주의 제조면허를 신규로 받은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고수량이란 당해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kl를 말한다(「주세법시행령」 제21조의 2). 즉 농민주로 지정된 과실주생산자 중 500kl 이하의 소규모 업체와 신규업체를 대상으로 200kl 이하에 대해서는 과실주 주세의 절반을 감면한 15%만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표 2-4. 우리나라의 주종별 주세체계

단위: %

구	분	주 세	교육세	부가세	전체 세율
발효주	탁 주	5	-	10.5	15.5
	약 주	30	-	13.0	43.0
	청주, 과실주	30	3.0	13.3	46.3
	맥 주	72	30.0	23.0	125.0
증류주(위스키, 브랜디, 소주)		72	21.6	19.4	113.0

주정: 57천원/kl(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도마다 600원 가산)

주 1: 교육세는 주세의 10%(증류주는 30%), 부가세는 판매가(주세+교육세)의 10%

주 2: 농민주중 과실주는 일정물량(200kl) 출고분까지 주세를 50% 감면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생산하는 과실주제조업자에 대해 주세를 감면함으로써 농산물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국산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주나 청주는 왜 누락하고 있는지? 쌀이나 보리 등 여타의 농산물을 활용한 민속주나 농민주 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과실주에 대해서만 주세를 감면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정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에는 송영길의원 등이 “모든 민속주와 농민주의 주세를 50% 인하하자”는 「주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민속주와 농민주에 대한 주세감면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이들 산업을 육성하

려는 정책의 목적이 뚜렷해야 함은 물론, 원칙적으로 WTO 체제 하에서 통용되는 국제적 규범에 따라 외국상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산농산물을 이용한 모든 민속주나 농민주에 대한 세금 감면보다는 지역특산주나 소규모 농민주 등에 대해 주세를 차등화 하는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5.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주류는 주세보전과 알코올중독이나 청소년 음주 등 국민건강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정부에서 엄격하게 제조 및 유통을 통제해 왔다. 따라서 주류를 산업적으로 인식한 것은 1993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농림부장관 추천에 의한 민속주와 농민주 제조면허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국세청 자체가 규제위주의 주류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부는 자금지원과 홍보 및 판촉지원 등 부분적인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주류제조면허 추천업체를 포함한 농산물가공업체에 대해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그동안 40개 업체에 대해 농산물가공산업육성자금으로 130억 원(보조 43억 원, 융자 87억 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하였는데 1999년부터는 보조를 폐지하고 전액 융자지원방식으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자금의 성격상 장기 숙성을 필요로 하는 주류업의 특성에 맞지 않아서 시설개보수나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4년부터는 ‘농업종합자금’에 통합되어 3년 거치 10년 상환에 연리 3%로 융자조건을 개선하였다.

또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민속주와 농민주의 기술개발을 위해 2003년에는 5건에 708백만 원, '04년에는 3건 420백만 원, '05년에는 8건에 832

표 2-5. 농림부의 '전통주산업육성대책' 주요 내용

추진전략	전통주산업육성대책
전통주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주의 우수성과 문화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용 책자발간, 인터넷 포탈사이트구축, 전통주빛기 체험 등 교육활동</li> </ul> </li> <li>- 전통주의 성장잠재력과 대한 체계적 연구(한식세계화 사업 연계)</li> <li>- 전통주의 상품화, 신타조사결과 DB화, 산업신타조사</li> <li>- 생산자단체 육성으로 정보교류, 기술개발, 원료 공동구매, 홍보 등 협력</li> </ul>
기반기술개발과 세계수준의 품질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연구단체 등 전통주 전문가집단의 조직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미나와 국제심포지엄 등 학술활동지원, 상호네트워크 구축</li> </ul> </li> <li>- 농촌진흥청에 전담 연구부서 설치, 연구개발 및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식품연구원의 전통주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확충</li> </ul> </li> <li>- 품질향상과 상품화 기술개발을 위해 전통주연구사업단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효미생물, 제조기법, 품질균일화 등 분야별 연구로드맵 작성</li> </ul> </li> <li>- 전통주업체의 시설개보수자금 지원확대(130⇒160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업체의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을 위한 전문기관지정</li> </ul> </li> <li>- 전통주에 대한 품질규격제정 및 인증제 도입추진</li> </ul>
전통주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경영체를 품목별 공동브랜드 중심으로 통합유도, 규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산업과 연계, 지역특화작목 활용하는 전통주 우선지원</li> <li>• 공동브랜드 경영지원사업 확대</li> </ul> </li> <li>- 정부미 공급가격의 할인율(현행 80%)을 연차적으로 확대</li> <li>- 주류제조용 전용품종개발 지원, 계약재배로 안정적으로 공급</li> <li>- 전통주업체에 대한 가공용 원료수매자금 운용기간 연장</li> </ul>
전통술 대중화를 위한 판촉·홍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주 수요창출을 위한 전시회, 지역축제 등 이벤트행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식품전시회에 별도의 전통주 홍보관 운영</li> </ul> </li> <li>- 공공기관의 공식행사 건배주 활용, 명절 등에 전통술 선물하기 캠페인</li> <li>- 온오프라인상의 전통주사랑 소모임 네트워킹, 활동비 지원</li> </ul>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전통명주 발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단체별 1지역 1특산주 선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개선, HACCP시설, 포장용기, 브랜드 등 소요자금지원</li> </ul> </li> <li>- 전통주 명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능전수교육, 해외견학, 명인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지원</li> </ul> </li> <li>• 전시·홍보·판매·교육·관광 등 다목적 전수관 건립시 지원검토</li> <li>- 국제박람회참가, 수출유망품은 시장개척, 판촉·홍보, 포장디자인개발 지원</li> </ul>
농업·관광 등 전후방 산업과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양주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li> <li>- 전통술을 테마로 한 지역관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토산업, 지역농업클러스터, 특산단지 등에 전통주 테마반영</li> </ul> </li> </ul>
전통주산업 발전을 위해 타 부처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세인하, 통신판매 장소 및 수량확대, 전자상거래 허용, 공동 브랜드 사용, 주류의 원산지 표시, 농촌관광마을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완화, 전통주제조업체의 소득에 관한 비과세 기준 상향조정 등</li> </ul>

백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였다. 아울러 해마다 5건 내외의 민속주 및 농민주 업체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우리술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하고, 이들 주류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박람회참여 시 행사비나 수출용 포장·디자인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의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정작 이들 업체의 실태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육성정책의 틀 속에서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최근 농림부가 ‘전통주산업육성대책(2006.9)’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표 2-5>와 같다. 즉 2006~2015년 동안 총 791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주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연구개발 강화, 품질규격 제정과 인증제 도입 등으로 0.2% 수준인 시장점유율을 5%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구상이다.

이와 같은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에도 불구하고 주류분야는 제조와 유통허가는 물론 심지어 제조방법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산업의 활성화를 기약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제 3 장

### 민속주 및 농민주의 실태와 문제

#### 1.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실태

주류산업의 실태는 ‘국세통계연보’에 발표되는 주종별 면허업체수와 출고량, 납세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민속주와 농민주의 경우 자료를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주류제조 면허업체수는 탁주제조업체의 급격한 감소로 1993년의 1,366업체에서 2000년의 1,295 업체로 줄어들었으나 최근 진입장벽 완화로 소규모 맥주 및 농민주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2005년에는 1,422개로 늘어나고 있다. 주종별로는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주정과 청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및 브랜드의 경우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소비가 줄고 있는 탁주는 1993년의 1,204개 업체에서 2005년에는 813개 업체로 391개나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민속주와 농민주는 18개에서 232개 업체로 무려 214개나 늘어났다.

농림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제조면허가 이루어진 1993년 이전까지는 문화재청과 제주도 등에서 지정한 40여 개가 넘는 민속주 중 14개 업체만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지정한 ‘전통식품명인’을 민속주로 추가하면서 1995년 24개, 2000년 44개, 2005년 48개로 늘어났으나 농민주는 1993년 1개를 지정한 이래 1995년 13개, 2000년 74개, 2005년 184개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전통문화의 계승·보전에 필요하거

나 전통식품명인 지정 등 새로운 민속주의 발굴 자체가 쉽지 않은데 비해 농민주의 경우 진입장벽 완화와 함께 국산 농산물원료를 활용한 부가가치 증대의 가능성, 그리고 지역별로 생산되는 다양한 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 때문에 일종의 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류의 종류별 출고량을 보면 1990년의 경우 맥주(45.5%)와 희석식소주(24.4%) 및 탁주(19.6%)가 전체의 8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5년에는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각기 56% 및 28.6%로 늘어난데 비해 탁주는 5.1%로 줄어들었다. 탁주가 줄어든 부분을 약주와 과실주 등 저도주로 대체하고 있으며, 최근 웰빙바람과 탁주의 주질 개선 등으로 탁주출고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민속주와 농민주 출고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0.03%(803kl)에서

표 3-1. 연도별 주류제조면허 업체수와 농민주 및 민속주업체

주류의 종류	1993	1995	2000	2003	2005	2005			
						소 계	민속주	농민주	
주 정	15	14	12	11	10	-	-	-	
발효주	탁 주	1,204	1,136	992	888	813	4( 0.5)	4( 0.5)	-
	약 주	50	74	111	151	164	41(25.0)	25(15.2)	16( 9.8)
	청 주	4	4	3	3	6	-	-	-
	맥 주	9	9	7	86	118	-	-	-
	과실주	15	20	25	61	84	-	-	81(96.4)
증류주	증류식소주	8	10	14	16	21	8(38.1)	6(28.6)	2( 9.5)
	희석식소주	13	14	17	17	17	-	-	-
	위스키류	5	4	5	7	8	-	-	-
	브랜디류	2	3	3	3	5	-	-	-
	일반증류주	17	23	27	30	34	9(26.5)	5(14.7)	4(11.8)
	리큐르류	15	40	72	87	96	63(65.6)	6( 6.3)	57(59.4)
기 타 주 류	5	3	5	20	46	16(34.8)	2( 4.3)	14(30.4)	
합 계	1,366	1,357	1,295	1,380	1,422	232(16.3)	48( 3.4)	184(12.9)	

주: ( )내는 2005년 주종별 전체 주류업체 중 민속주 및 농민주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6



2000년에는 0.06%(1,814kl), 그리고 2000년에는 0.32%(10,474kl)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서 민속주의 출고량은 감소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민속주업체가 노령화된 기능보유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에 의해 제조방법이나 원료사용 등에 있어서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납세액의 구성비는 주종별 주세의 차이로 인해 출고량과는 다소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출고량도 많고 주세도 높은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비록 출고량은 많지만 주세가 낮은 탁주의 비중이

표 3-2. 주류의 종류별 출고량

단위: kl(%)

주 종	1990	1995	2000	2005		
				전 체	그중민속주	그중농민주
탁 주	562,011(19.56)	246,093	158,080	166,319(5.12)	319(0.19)	-
약 주	4,078(0.14)	3,195	22,927	45,033(1.39)	515(1.14)	723(1.61)
맥 주	1,307,672(45.51)	1,850,334	1,730,790	1,818,588(56.04)	-	-
청 주	34,859(1.21)	43,302	28,477	21,512(0.66)	-	-
과 실 주	8,943(0.31)	7,930	6,622	20,408(0.63)	-	7,135(34.96)
증류식소주	26(0.00)	816	502	406(0.01)	205(50.4)	346(85.22)
희석식소주	701,566(24.42)	762,839	866,967	929,389(28.64)	-	-
주 정	203,818(7.09)	221,293	218,665	222,962(6.87)	-	-
위 스 키	8,559(0.30)	16,488	12,572	10,586(0.33)	-	-
브 랜 디	168(0.01)	154	66	8(0.00)	-	-
일반증류주	4,108(0.14)	2,979	4,341	6,312(0.19)	8(0.13)	76(1.20)
리 큐 르	37,408(1.30)	8,520	14,755	2,324(0.07)	168(7.23)	335(14.41)
기타 주류	3(0.00)	633	877	1,516(0.05)	139(9.17)	505(33.31)
합 계	2,873,219	3,163,576	3,065,641	3,245,363	1,354(0.04)	9,120(0.28)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통계자료, 각 연도

표 3-3. 주류의 종류별 납세액

단위: 백만 원(%)

주 종	1990	1995	2000	2005		
				전 체	그중민속주	그중농민주
탁 주	12,800(1.25)	6,114	6,088	6,648(0.28)	18(0.27)	-
약 주	5,453(0.53)	1,253	22,187	47,318(2.01)	929(1.96)	794(1.68)
맥 주	655,192(64.13)	1,283,729	1,267,568	1,247,725(53.00)	-	-
청 주	36,185(3.54)	45,272	48,918	22,570(0.96)	-	-
과 실 주	4,654(0.46)	3,941	5,652	23,804(1.01)	-	10,927(45.90)
증류식소주	51(0.00)	2,041	2,669	2,012(0.09)	1,426(70.87)	1,053(52.34)
희석식소주	123,746(12.11)	623,573	520,913	817,668(34.74)	-	-
주 정	7,198(0.70)	7,364	2,494	2,494(0.11)	-	-
위 스 키	67,978(6.65)	102,663	188,124	166,392(7.07)	-	-
브 랜 디	877(0.09)	90	158	108(0.00)	-	-
일반증류주	5,269(0.52)	6,844	3,701	6,584(0.28)	61(0.93)	171(2.60)
리 큐 르	28,360(2.78)	20,562	49,692	2,324(0.07)	667(28.70)	738(31.76)
기타 주류	3(0.00)	168	441	9,942(0.10)	191(1.92)	93(0.94)
합 계	1,021,684	1,840,362	2,254,181	2,353,986	2,873(0.12)	13,776(0.59)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통계자료, 각 연도

적은 반면, 출고량이 작지만 주세가 높은 위스키와 리큐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민속주와 농민주에 부과한 주세는 1996년 19억 5천6백만 원에서 2000년 32억 9천3백만 원, 2005년 166억 4천9백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주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의 0.15%, 2005년의 0.71%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주종별로 보면 민속주업체는 주로 약주(44.5%)와 증류식소주(16.9%), 리큐르주(11.7%)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데 비해 농민주업체는 과실주(83.8%)와 리큐르(7.8%)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

## 2.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문제

민속주와 농민주 업체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분야가 산업적으로 크게 활성화 되었다고 판단하기 이르다. 즉 민속주의 출고량은 2001년의 1,278kl에서 2002년에는 1,635kl로 약 27.9% 증가하였으나 그 후 다시 감소하여 2005년에는 1,278kl에 머물고 있다. 같은 기간 농민주는 959kl에서 2,570kl, 그리고 9,120kl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들 특정주류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민속주와 농민주가 전체 주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출고량의 0.32%, 납세액의 0.71%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표 3-4. 민속주 및 농민주의 규모별 분포

단위: kl, 백만원(%)

구 분		~1천만 원	1~5천만 원	5천~1억 원	1억~5억 원	5억 원~	계/평균
민 속 주	업체수	10(33.3)	5(16.7)	4(13.3)	9(30.0)	2(6.7)	30
	출고량	8(0.9)	36(4.0)	31(3.4)	624(68.6)	211(23.2)	1,699
	과세표준	48	114	272	2,328	1,733	4,495
	주 세	22(1.3)	53(3.1)	84(4.9)	789(46.4)	751(44.2)	910
	업체당 출고량	0.8	7.2	7.8	69.3	105.5	56.6
	업체당 과세표준	4.8	22.8	68.0	258.7	866.5	149.8
	업체당 주세	2.8	10.6	21.0	87.7	375.5	30.3
농 민 주	업체수	29(29.3)	25(25.3)	15(15.2)	18(18.2)	12(12.1)	99
	출고량	24(0.5)	109(2.0)	187(3.5)	719(13.5)	4,292(80.5)	5,331
	과세표준	111	549	1,021	3,242	26,238	31,161
	주 세	48(0.6)	238(3.2)	331(4.4)	1,086(14.5)	5,772(77.2)	7,475
	업체당 출고량	0.8	4.4	12.5	39.9	357.7	53.8
	업체당 과세표준	3.8	22.0	68.1	180.1	2,186.5	314.8
	업체당주세	1.7	9.5	22.1	60.3	481.0	75.5

주: 국세청이 집계한 내부자료(2007.4)이지만 공식발표한 국세통계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2005년 현재 일반주류업체의 출고량은 업체당 2,390kl인데 비해 민속주 및 농민주의 경우 각기 24.2kl, 및 38.5kl에 불과하다. 한편 국세청에서 자체 집계한 내부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업체의 규모별 분포를 보면 매출액 5천만 원 미만인 업체가 민속주 50%, 농민주 54.6%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1천만 원 미만 업체도 민속주 33.3%, 농민주 29.3%로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5억 원이상 업체는 민속주가 6.7%(2개), 농민주가 12.1%(12개)인데, 농민주의 경우 10억 원이 넘는 업체도 2개나 포함되어 있어서 민속주에 비해서는 농민주 업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알려진다.

업체당 평균 주세납부액은 민속주와 농민주가 각기 30.8백만 원과 75.5백만 원을 각기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별로 보면 매출액 5천만 원 미만 규모의 업체가 납부하는 주세는 민속주가 75백만 원(평균 5백만 원), 농민주가 286백만 원(5.3백만 원) 수준이며, 1천만 원 미만 규모의 업체가 납부하는 주세는 민속주가 22백만 원(업체당 2.8백만 원), 농민주가 48백만 원(업체당 1.7백만 원)에 불과하다. 이들 민속주 및 농민주업체가 납부하는 주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면한다고 하더라도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영세한 규모 때문에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 및 판촉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들 민속주 및 농민주 업체의 당면 현실이다. 소비자들에게 “민속주 및 농민주를 구입해 본 적이 있는지?” 문의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2%가 구입해 본적이 있고, 나머지는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연령별로는 20대(69.9%)보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성별로는 여성(73.2%)보다 남성이, 소득수준별로는 저소득층(69.7%)보다는 고소득층이, 그리고 직업별로는 학생(61.0%)보다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그룹에서 민속주 및 농민주를 구입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민속주 및 농민주 구입 경험자를 대상으로 구입목적을 문의한 결과 응답자의 55.9%가 ‘선물용’으로 구입하고 있으며, 18.2%는 ‘제사나 성묘용’으로 구입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적으로 마시는 술은 아니란 점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선물용으로 구입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은 반면, 40~50대는 자가소비용의 비율이 높아 이들 계층이 민속주 및 농민주의 실소비자란 사실

을 알 수 있다. 성별이나 학력별로는 별 차이가 없으나 소득수준별로 고소득자와 직업별로 자영업자 및 공무원그룹에서 자가소비용 구입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표 3-5. 민속주 및 농민주 구입경험과 구입목적

단위: %

구분	구입 경험	구입 목적					
		선물용	자가소비	제사, 성묘	취미, 호기심	기타	
전체	79.2	55.9	21.4	18.2	4.0	0.5	
연령	20대	69.9	59.7	15.3	20.8	2.8	1.4
	30대	80.0	65.0	16.3	16.3	2.5	0.0
	40대	81.3	52.3	27.7	16.9	3.1	0.0
	50대	83.2	51.3	21.8	19.3	6.7	0.8
성별	남	81.9	56.1	20.4	18.3	4.8	0.3
	여	73.2	55.4	24.1	17.9	1.8	0.9
월소득	200만 원 미만	69.7	58.0	15.9	21.7	2.9	1.4
	200~300만 원	73.3	57.0	20.6	15.9	5.6	0.9
	300~500만 원	86.7	54.1	21.8	20.6	3.5	0.0
	500만 원 이상	84.6	56.4	29.1	10.9	3.6	0.0

자료: 이동필외, 농민주 및 민속주산업 발전방안과 개발모델, 2005. 1

같은 조사에서 “민속주 및 농민주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한 결과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49.7%)’는 응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음주 후 뒷맛이 깨끗하지 않다(44.9%)’와 ‘맛이 없다(31.7%)’, ‘알코올 도수가 적절하지 않다(23.4%)’는 양조기술과 관련된 응답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속주 및 농민주를 구입하기 어렵다(18.6%)’와 ‘민속주 및 농민주와 함께 먹을 안주가 마땅하지 않다(15.0%)’, ‘품질을 믿기 어렵다(9.0%)’는 응답을 하는데 이는 민속주 및 농민주의 유통방법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된다.

표 3-6. 소비자들이 민속주 및 농민주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단위: %

선호하지 않는 이유	연 령				성 별		합 계
	20대	30대	40대	50대	남	여	
가격이 비싸서	32.5	50.0	53.1	64.7	49.6	50.0	49.7
뒷맛이 깨끗하지 않아서	57.5	36.4	46.9	38.2	45.5	43.2	44.9
맛이 없어서	45.0	29.5	34.7	14.7	30.9	34.1	31.7
도수가 높거나 낮아서	25.0	20.5	22.4	26.5	24.4	20.5	23.4
구입하기 어려워서	10.0	31.8	10.2	23.5	16.3	25.0	18.6
안주가 마땅하지 않아서	15.0	15.9	14.3	14.7	15.4	13.6	15.0
품질을 믿을 수가 없어서	15.0	15.9	14.3	14.7	15.3	13.6	9.0
기 타	7.5	6.8	2.0	5.8	5.0	3.7	5.4

주: 기타에는 숙취(1.8), 소주선호(1.2), 배가 부르다, 마실 기회가 적다, 술집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음주를 즐기는 편이 아니다(각 0.6)이 포함.

자료: 이동필 외, 전게서, 2005. 1

이는 “민속주 및 농민주를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답변을 얻고 있는데 ‘민속주 및 농민주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다(66.7%)’, ‘가격이 너무 비싸다(53.3%)’, 그리고 ‘민속주 및 농민주를 구입하기 어렵다(49.5%)’라고 응답함으로써 이들 3 요소가 민속주 및 농민주의 판매확대를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맛이 없다(13.3%)’와 ‘포장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8.6%)’, ‘품질을 믿을 수 없다(3.8%)’, ‘향이 싫다(2.9%)’ 는 등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상 소비자조사 결과는 ① 민속주 및 농민주를 일상적으로 마시는 술이 아니라 선물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과 ② 가격이 비싸고, ③ 맛이나 향 등 품질이 좋지 않고, ④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해 정보가 없고, 가까운 곳에 구입처가 없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표 3-7. 민속주 및 농민주 생산업체가 당면한 애로사항

단위: %

당면한 애로사항	첫번째	두번째	합 계
기술부족	8.6	3.3	11.9
원료확보의 어려움	5.7	3.3	9.0
시설낙후	5.7	0.0	5.7
자금부족	40.0	0.0	40.0
노동력부족 및 인건비부담	2.9	0.0	2.9
제조방법 규제	5.7	10.0	15.8
판매부진	11.4	23.3	34.7
과도한 세금	20.0	60.0	80.0

자료: 이동필 외, 전계서, 2005. 1

같은 연구에서 이들 업체에게 “당면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문의한 결과 ‘과도한 세금(80.0%)’이 단연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밖에 ‘자금부족(40.0%)’, ‘판매부진(34.7%)’, ‘제조방법에 대한 지나친 규제(15.8%)’, ‘기술부족(11.9%)’ 등을 응답하였다. 영세한 규모의 민속주 및 농민주 생산업체의 입장에서 이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데 명백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제 4 장

###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발전방향

#### 1. 주류산업 육성의 전제조건

주류는 세원(稅源)으로서 국가 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정부가 규제위주의 통제를 실시해 왔다. 선진국에서는 주류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홍보 및 관측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류산업 육성의 전제조건은 먼저 시장질서와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와 주류의 규격 및 제조방법에 대한 규제완화, 판매면허의 통합과 판매업자 간 거래허용 등 주류 관련 제도상 지나친 규제의 완화와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하는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주류분야의 규제완화는 술이 가진 특성상 국민건강이나 기본적인 사회질서의 유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바탕 위에 세계적인 주류산업 선진국의 제도와 정책을 면밀히 조사·연구하여 국제적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업계가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주류산업의 활성화가 국내 농업이나 주류 관련 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위스키나 와인처럼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외국산원액을 가져와 단순히 병입해서 판매한다면 아무리



우리나라의 주류시장 규모가 커지고 매출액이 늘어난들 국민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쌀과 온갖 종류의 과일, 생약재 등 우리 고유의 농산물과 전통적인 양조기법을 결합하여 우리문화를 결집한 전통식품산업으로의 주류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세 차등화와 별도의 지원정책을 통해 민속주나 지역특산주, 그리고 농민주와 같은 소규모 업체의 주류산업 참여를 촉진시키고, 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자금과 기술, 판로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는 주세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약주·맥주·과실주 등 저 알코올 주에 대한 세금이 소주나 위스키 등 고도주에 대한 세금에 비해 상대적 차이가 작기 때문에 종종 국제간 마찰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소비자들을 높은 도수의 주류에 노출시킴으로써 음주로 인한 건강문제나 각종 피해를 더 많이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도주보다는 저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도주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산업적 자생력을 가질 때까지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체에게는 감세혜택을 주는 것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국제적 규범의 하나이다. 특히 프랑스의 와인이나 영국의 위스키와 같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주세혜택을 부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농업과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주세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넷째는 주류에 대한 관리행정체계가 정비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주류관리는 「주세법」에 의해 재정경제부가 책임을 맡고, 국세청이 주세보전과 징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국민건강 문제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며, 안정적인 원료의 조달이나 산업적 육성을 위한 지원업무는 농림부나 산업자원부 소관업무이다. 따라서 이들 부서의 역할과 기능을 종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통술에 대한 지원·육성 업무는 농산물가공의 틀 속에서 농림부가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유럽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발전방향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이유를 극복하는 것, 즉 가격을 낮추고 맛과 향, 숙취제거 등 품질을 개선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전통술의 중요성이나 제조 및 구입방법 등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민속주 및 농민주의 장점인 ‘건강에 유익하다’는 점과 ‘우리 것으로 유명하고, 국산원료를 사용하여 안전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술을 고급 건강문화상품으로 차별화하고, 국산 생약재 등과 결합하여 건강기능성 약주로서 장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로 정책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문의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즉 ‘맛과 향 및 품질개선 지원(54.2%)’, ‘홍보 및 판촉지원(53.2%)’, ‘전통술의 우수성 홍보지원(36.0%)’, ‘전통제조기법의 발굴 및 복원(31.2%)’, ‘우편 및 인터넷판매 확대(9.7%)’, ‘포장 및 디자인개발지원(8.9%)’, ‘연구소 설립 및 관련연구 확대(6.9%)’ 등을 당면과제로 들고 있다.

한편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는 ‘소규모업체에 대한 주세 차등화(72.3%)’, ‘출고가격표시제 폐지(45.7%)’, ‘인터넷 및 통신판매 확대(37.2%)’, ‘제조방법 및 원료사용 규제완화(16.1%)’, ‘관리행정체계 정비(12.9%)’ 등을 들고 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지나친 음주규제와 국민건강보호’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편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체가 개선과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제도정비가 이루어져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산업정책적 과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시설 및 운전자금의 확대(50.3%)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인터넷 및 통신판매 허용(32.9%), 홍보 및 판촉촉진 지원

(27.1%), 주류의 유통구조개선(26.7%), 포장 및 디자인개선 지원(21.1%), 품질 관리(20.9%) 등을 주요한 산업정책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민속주 및 농민주 업체들이 규모가 영세하여 독자적인 판로개척의 여력이 없고, 연구개발과 홍보판촉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표 4-1.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단위: %

제도개선 과제	첫번째	두번째	합 계
출고가표시제 폐지	45.7	0.0	45.7
소규모업체 주세차등화	40.0	32.3	72.3
인터넷/통신판매 확대	11.4	25.8	37.2
인허가 절차 간소화	0.0	0.0	0.0
제조방법 및 원료규제 완화	0.0	16.1	16.1
지나친 음주규제와 국민건강 보호	2.9	0.0	2.9
주류광고 규제 완화	0.0	6.5	6.5
주류원료의 원산지 및 효능표시 강화	0.0	6.5	6.5
관리행정체계 정비	0.0	12.9	12.9

자료: 이동필 외, 전계서, 200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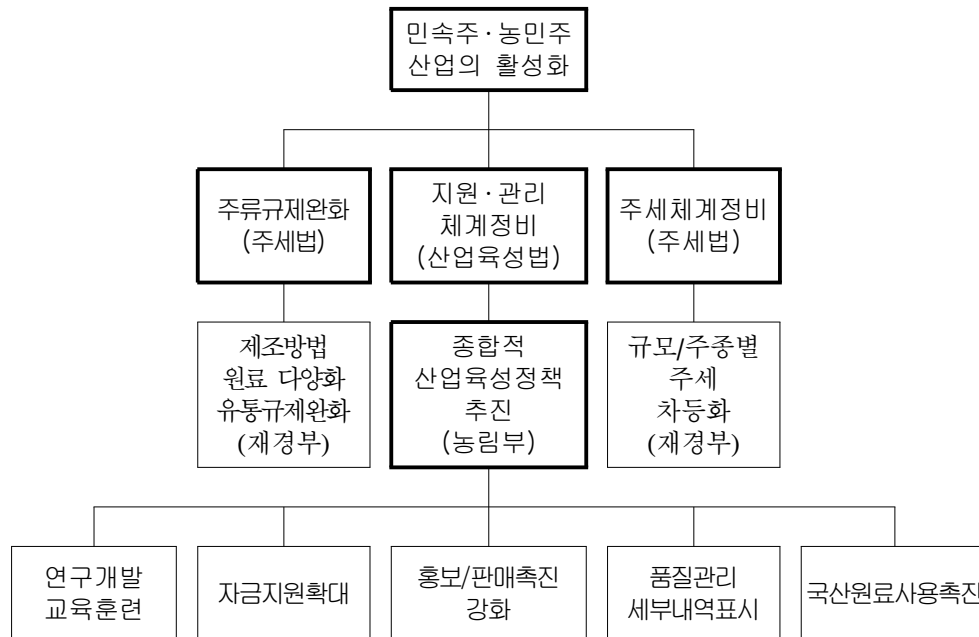
표 4-2.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적 과제

단위: %

산업정책적 과제와 방향	첫번째	두번째	합 계
원료의 안정적 공급	2.9	3.0	5.9
주류의 유통구조 개선	17.6	9.1	26.7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확대	38.2	12.1	50.3
기술 및 경영지도 강화	2.9	3.0	5.9
주류분야 연구개발 지원	8.8	0.0	8.8
품질관리 지원	8.8	12.1	20.9
인터넷 및 통신판매 확대 허용	14.7	18.2	32.9
홍보 및 판촉촉진지원	2.9	24.2	27.1
포장 및 디자인개선 지원	2.9	18.2	21.1

자료: 이동필 외, 전계서, 2005. 1

그림 4-1.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발전방향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 전통술의 맛과 향, 숙취제거 등 품질을 개선하되 특히 젊은층과 서민들의 기호에 맞으면서도, 건강기능성을 가미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과 포장 및 디자인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영세한 업체들이 개인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에서 전통적으로 전해오던 주류제조기법을 개량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양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양조와 발효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과 경영·마케팅 등에 대한 기술을 체계적으로 교육, 훈련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다.

둘째, 민속주 및 농민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와 차별적 유통을 위한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주(醕酒)들은 모두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농산물을, 그 지역에 전해 오는 제조방법으로 가공하고, 이를 상표에 표시해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데 프랑스와인에 대한 ‘지리적명칭표시보호제도(AOC)’와 ‘일본청주원산지호칭제도(SOC)’가 그 대표적

인 예이다. 따라서 특정한 민속주나 지역특산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업체에서 원료나 제조방법, 생산지역 등 품질기준과 표기방법을 제도화하고, 이를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합리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을 때 브랜드화와 차별적 유통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촉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규모가 영세하여 홍보·판매촉진의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통술의 우수성이나 유래, 원료나 제조방법·구입방법·음주예절 등에 대한 공익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며, 시음회나 품평회, 우리술페스티벌 등 다양한 이벤트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민속주와 농민주를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산재한 영세업체들이 적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인터넷이나 우편판매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우리 전통술의 가격인하를 위해 주세인하와 함께 민속주와 농민주 업체의 경쟁력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이들 중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와 기술개발, 포장 및 디자인개선, 원료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주세 차등화와 경영컨설팅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종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출고가격의 절반 이상인 현행 주세체계 하에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주류유통마진과 덤핑관행까지 고려하면 이를 재정비하지 않고는 가격인하의 벽을 깨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주류관련 제도 및 행정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도부문에서는 현재 예외적으로 운용하는 민속주 및 농민주의 경우 추천을 통한 허가제도의 절차와 방법, 심사기준 등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국민건강과 청소년보호의 구체적인 방안, 과세대상 주종의 단순화와 주세 차등화, 그리고 민속주기능보유자와 전통식품명인에 대한 지정 및 지원제도 등도 정비되어야 할 과제이다. 아울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류정책의 추진과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행정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과제 중 제도개선이나 행정체계 정비 등은 당연히 국가가 수행해야 할 몫이지만, 이 밖에도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이나 공익적 차원의 홍보, 기초통계 자료의 수집 및 제공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류통계의 경우 국세통계에 의존하고 있는데 제조허가업체 수와 출고량, 납세액 등에 관한 매우 제한적인 자료 외에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도대체 현재 가동 중인 주류업체가 몇 개이고, 종업원은 몇 명이며, 무슨 원료를 얼마나 사용해서 어떤 술을, 얼마나 생산, 어디에 판매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산업적 육성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 제 5 장

###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1. 주정 및 민속주·농민주 사업허가를 위한 시설규제 완화

지난 1907년 「주세령」이 공포된 이래 우리나라는 주류의 제조 및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해 왔다. 즉 일정한 규모의 자본금과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아예 산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일단 진입을 하고 나면 제도에 의해 사업성까지 보장받는 소위 ‘땅 잡고 헤엄치는 사업’으로 인정되어 왔다. 이와 같은 면허제도는 주질(酒質)을 향상시키고 주류산업을 규모화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본은 영세하더라도 기술과 원료를 가진 잠재적 사업자들의 진입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주류면허제도가 갖는 지나친 규제에 대한 오랜 논란 끝에 지난 1998년 농민주의 경우 기존의 민속주처럼 공정별 시설의 최저용량 대신에 최소한의 제조장면적 기준만 설정하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이들 업체의 사업 참여를 제한하던 요인을 대폭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를 개선하기로 결정한바 있다(2007.2).

표 5-1. 민속주 및 농민주의 제조면허 시설요건 비교

주 종	농 민 주	민 속 주
탁·약주 청주	- 국실 : 6m <sup>2</sup> 이상 - 담금실 : 10m <sup>2</sup>	- 국실 : 6m <sup>2</sup> 이상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과실주	- 원료처리실 : 6m <sup>2</sup> 이상 - 담금실 20m <sup>2</sup> 이상(밑술, 제성, 저장실포함)	- 담금실 : 10m <sup>2</sup> 이상 (밑술실, 제성실, 저장실 포함)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 담금실 : 25m <sup>2</sup> 이상(원료처리, 침출, 발효, 저장, 제성실 포함) - 증류실 : 8m <sup>2</sup> 이상(제조방법상 필요한경우)	- 증류실 : 8m <sup>2</sup> 이상 (발효주 제외)

자료: 「주세법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 2007

특히 「주세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 나목 <별표 3>에 의한 시설기준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특정주류임에도 불구하고 상이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민속주로서 증류주는 10m<sup>2</sup>의 담금실만 있어도 되는데 비해, 농민주로서 증류주는 25m<sup>2</sup>의 담금실을 요구함으로써 과실주의 담금실도 민속주는 10m<sup>2</sup>를 요구하는데 비해 농민주는 20m<sup>2</sup>를 요구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밖에 여러 가지 술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 주정의 경우 발효조의 총용량이 500kl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원료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주정제조 참여를 제한하고, 결과적으로 남아도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주정의 생산과 이를 바탕으로 주류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속주 및 농민주 제조허가의 전제조건인 시설기준을 좀 더 완화하여 농업인 및 농촌관광에 종사하는 음식숙박업자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 때 특정주류인 민속주와 농민주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시설규모를 민속주 기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포도주나 맥주와 같은 발효주를 제조할 수 있도록 허가할 때, 의무적인 제조시설 기준요건을 설



정하지 않고 주류제조에 사용되는 시설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보면, 민속주와 농민주에 대한 차별적인 면허제도의 도입이나 제조시설 요건의 완화가 국제규범을 벗어 난다고 보기 어렵다.

이밖에도 정부의 지정을 받은 농어촌지역의 관광시설에서 음식 및 숙박업을 하는 경우 주류제조 및 판매허가 요건을 소규모맥주(Micro Brew) 제조자와 같이 기존의 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예: 담금조 0.5~2kl, 발효조 5~25kl)하고, 생산된 상품을 현지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 체험마을이나 농가민박업소 등에서 생산한 소규모 민속주와 농민주 등에 대해서는 현지 시음은 물론 일정 한도 내에서 기념품이나 선물용 등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반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제조방법의 다양화와 원료사용규제 완화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기능성 술, 소위 약주(藥酒)로서 전통주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의 부존자원이나 향토음식, 각종 생약재 등과 결합하여 건강기능성과 지역성을 부각시킨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곧 발전전략의 핵심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류는 「주세법」에 의해 규격과 제조방법을 명시하고, 주종별로 원료사용량과 첨가물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기호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제품의 생산을 저해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세법」 제4조에 의해 “탁주는 곡류와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그리고 발효·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식물약재, 단 과실 또는 과채류는 제외)를 첨가한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탁주에 과실첨가를 제한

하고 있다<sup>6</sup>. 마찬가지로 과실주 제조에는 곡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독일의 맥주나 일본의 청주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탁주, 또는 과실주의 제조를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약주의 경우 누룩에서 술의 발효에 필요하고 풍미를 개선시킬 수 있는 미생물만 추출하여 약주를 제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와 구분하기 위해 원재료의 2% 이상 누룩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당분첨가를 금지한다든지, 탁주의 경우 풍미의 다양성을 위해 당분의 첨가가 필요하나 청주·맥주·소주·위스키 등의 주종에는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당분첨가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포도 품종과 재배지에 따라 수천종의 각기 다른 와인을 생산하는 유럽은 차치하고라도 쌀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식문화를 가진 일본에서 조차 청주를 세계적인 명주로 발전시킨 성공사례에 비하면 너무나 대조적이다. 즉 일본에는 청주제조장이 전국에 2,076개나 있으며 8천 500억엔 규모의 시장을 차지하고, 2천 800만 달러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2002년). 특히 일본 청주는 원료와 제조방법에 따라 긴조슈(吟醸酒), 준마이슈(純米酒), 혼조조슈(本醸造酒)의 특정명칭주로 구분되며, 이는 다시 사용원료의 종류와 정미비율, 누룩쌀사용비율 등에 따라 「청주의제조법품질표시기준」의 8종류로 분류된다<sup>7</sup>.

또한 주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는 「주세법」 제4조에 의해 탁주나 동동주에 포도·사과·복숭아 등을 섞은 포도탁주, 사과동동주 등이나 포도주나 사과주

6 과실주 제조에 있어서 첨가하는 당분의 중량이 주원료의 당분과 첨가하는 당분의 합계중량의 80%를 초과해서는 안 됨(「주세법시행령」 제3조 1항)

7 제조방법에 따라 나마자케(生酒: 술지게미를 거른 상태의 일본주), 나마쵸조슈(生貯藏酒: 막 거른 일본주를 저온 저장하였다가 출하 시 한번만 가열살균), 나마즈메슈(生酷酒: 가열 저장한 술을 추가로 가열하지 않고 병입, 출하), 生一本(자신의 공장에서 만든 순미주), 原酒(물을 첨가하지 않아 알코올이 18~20도나 되며 풍미가 농후), 오리酒(술지게미를 거른 찌거기를 그대로 둔 술), 고농도주(알코올도수를 24~36도까지 높인 술), 장기저장주(2~5년 장기저장 술), 다루사케(스기나무통에 넣어 향기를 살린 술), 니고리酒(술찌게미만 거른 흰색 탁주), 소프트주(알코올성분을 낮추어 10~14도로 부드러운 술), 발포주(알코올성분 8도 정도의 탄산가스 혼입), 高酸味酒(흰누룩을 사용해서 제조한 산미가 강한 술)등의 다양한 청주가 생산되고 있음

등 과일주에 쌀이나 곡물을 섞은 쌀 포도주, 보리사과주와 같은 다양한 주류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다양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전향적으로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한 『식품공전』에는 대부분의 생약재가 의약품으로 취급하여 식품원료에서 제외되어 있는가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널리 식용되어 온 원료조차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한 근거가 없으면 금지하고 있어서 다양한 식품과 주류생산을 저해하고 있다.

엄격한 주류 규격제한과 원료사용 규제 등은 기업의 창의성에 의한 다양한 주류개발 및 품질개선을 곤란하게 하며 수입 해외주류에 대한 국내주류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위생관리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류제조방법의 변경·추가 시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한 원료의 배합비율이나 알코올도수 변경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술검토가 불필요하므로 신고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sup>8</sup>.

### 3. 민속주 및 농민주의 유통규제 완화

주류 판매는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주류 제조업 및 판매업의 종류별로 취급 가능한 주종, 주류의 구입처 및 판매대상을 제한하고 도매업자간, 또는 소매업자간의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지나친 유통규제는 개별사업자들의 수요·공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오히려 불필요한 경쟁이나 무자료거래, 탈세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sup>8</sup> 제조방법 변경 시 사전신청을 하면 국세청기술연구소가 기술검토를 하고 제조방법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탁·약주의 경우 현행 규정상으로도 단순한 원료의 배합비율의 변경이나 알코올도수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절차인 국세청 기술검토절차를 생략하고 있음(『주세사무처리규정』 제37조 제1항)

민속주와 농민주의 경우 시설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특정주류도매업 허가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주류와는 달리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심지어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상의 우대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부분의 민속주 및 농민주업체들은 유통구조 개선과 통신판매 확대 등 판로문제를 큰 어려운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관련업체가 판매시에 느끼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판촉능력 부족으로 다양한 판매처의 확보가 어려움(67.8%)’이 가장 많고, ‘마케팅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부족(46.7%)’, ‘인터넷 및 통신판매 제한 등 유통규제(37.9%)’, ‘운송비, 택배비 등 물류비용 부담(29.6%)’ 등에서도 알 수 있다. 이들 업체의 판매처를 조사한 결과 백화점이나 할인매장(27.4%), 직판장(14.4%), 유흥음식점(13.9%), 우편판매(11.1%) 순으로 나타났다. 정작 특정주류도매상은 겨우 7.4%만 차지하고 있어서 민속주 및 농민주의 유통경로의 특혜중 하나인 특정주류도매업체도가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동필 외, 전게서, 2005).

표 5-2. 주종별 주류제조자의 거래상대방

구 분		관 매 대 상		
		도 매 업 자	소 매 업 자	실수요자
일반 주류 제조자	유흥음 식점용	종합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	×
	가정용	종합주류도매업자, 슈퍼·연쇄점본지부	공무원후생연금매점	×
탁주, 약주 제조자		탁·약주 판매할 수 있는 도매업자 (슈퍼·연쇄점 본지부 포함)	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유흥음 식업자, 슈퍼·연쇄점가맹점	○
민속주, 농민주 제조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종합주류도매업자(일 반탁주 제외), 슈퍼·연쇄점본지부(일 반탁주 제외)	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유흥음 식업자, 슈퍼·연쇄점가맹점	○
조미용 주류 제조자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슈퍼·연쇄점본지부	소매업자, 의제판매업자, 유흥음 식업자, 슈퍼·연쇄점가맹점	○

한편 규모가 영세하여 대리점이나 직매장을 개설하기 어려운 민속주 및 농민주업체의 판로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우편판매제를 허용하고 있다. 즉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98-21호)」에 따라 “민속주, 농민·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는 주류제조자가 1인 1회 판매수량을 20명 이하(추석과 설 명절 때는 50명)로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요금을 부담하면서 통신판매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취급량이 너무 작고, 이 또한 독점적으로 우체국에만 허용하고 있어서 오래 전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우체국 외에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신판매업체로 추가하고, 상업적인 통신판매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판매허용 물량을 확대하여 농민주와 민속주 등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규모 양조업체들의 판로확대를 위해 같은 지역 동종의 소규모 면허업체들이 공동상표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관광농원 등 정부로부터 지정 받은 농어촌지역의 관광시설에서 음식 및 숙박업을 하는 경우 주류제조 및 판매허가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방문객들에게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지역특산주를 생산·판매할 수 있는 양조주점(Brewery Pub)사업을 허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구조개혁특별구역법(2002년 법률 제189호)」에 의해 제정된 ‘주세법특례’로 구조개혁특별구역(特區)내에서 농업과 농가민박, 농원레스토랑 등 주류를 자신의 영업장에서 음용으로 제공하는 자가 특구내 자신의 주류제조장에서 생산한 쌀을 원료로 탁주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타 면허요건을 충족시키면 연간 최저예상수량(6kℓ)을 따지지 않고 제조 및 판매허가를 내준다. 2003년 이 제도를 도입한 이래 2006년 9월까지 전국 44개 지역(마을)이 특구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생산된 술은 농민주 제조 및 농원민박 등에서 판매하는 등 자신의 영업장에서 소비를 허가(선물용으로 지역 밖으로 판매할 때는 주류판매업 면허 필요)하고 있다(일본 특구제도 안내 및 구조개혁특구에 있어서 탁주제조면허의 입문, 2007).

#### 4.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주세 차등화

소비자와 생산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도 절박한 과제는 주세감면을 통한 영세업체의 가격경쟁력 제고이다. <표 2-4>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종별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매출액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본력은 물론이고 기술이나 경영능력, 마케팅 등 전 분야에 걸쳐 월등하게 우세한 일반 주류업체에 비해 대부분의 민속주 및 농민주업체는 경쟁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높은 주세율로 대기업 생산주류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2005년 현재 농민주 추천을 받은 375건 중 면허를 유지하는 업체는 약 절반인 197개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업체는 약 40개에 불과하다(서현수, 전통술 일반현황 및 지원실적, 2007)”.

민속주와 농민주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국민경제나 소비자들의 건강보호, 그리고 농가경제 안정과 건전한 음식문화의 계승발전이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에 걸맞은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규모 민속주와 농민주에 대한 주세 차등화는 WTO 체제하에서 통용되는 국제적 규범을 위배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제까지 지체되어 왔다.

외국의 특정주류에 대한 조세지원의 사례를 보면 크게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민이 만드는 주류에 대해서 면세를 해 주거나 지방산업육성, 또는 영세업체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세제도가 일반적이다<sup>9</sup>(표 5-3 참조). 유럽연합은 포도생산농민과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발효주나 소규모 주류제조에 대해 주세를 차등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화<sup>10</sup>하고 있는데 「유럽연합명령

<sup>9</sup> 농민주에 대한 면세 사례를 보면 포도재배가 농가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등은 물론이고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포도주에 대한 주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일부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술 또는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세를 부과하고 있음(정헌배, 외국의 농민주산업육성 실태와 시사점, 2003.2)

(Directive CEE) N°92 /83」에 의해 ① 연간 20만hl이하 맥주를 생산하는 소규모사업자, ② 알코올농도 8.5%이하 포도주 생산자, ③ 연간 10hl이하 소규모 증류주제조업자 등에 대해 주세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④ 지방특산품 또는 전통특산품에 대해 주세를 특별 적용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관점에서 저도주는 물론 농민주와 민속주, 그리고 이를 포함한 소규모 주류업체에 대해서 주세를 차등화 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이동필, 유럽포도주산업 견학보고서, 2002).

표 5-3. 선진 외국의 주세감면 사례

국 가	주세감면 사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생산량이 25만갤런에 못 미치는 와인제조장에 대해서는 최소 10만갤런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li> <li>- 15만갤런 이하 생산자는 갤런당 0.90달러를 공제하고, 연간 25만갤런에 도달할 때까지 15만갤런에서 1천갤런이 증가할 때마다 1%씩 공제액을 줄임으로써 소규모 와인생산업체를 세제상 지원(세율 : 갤런당 1.57달러)</li> </ul> </li> <li>○ 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200만 배럴 미만 생산업체에 대하여 최초 6만 배럴까지는 0.226달러, 6만배럴 이상은 0.581달러/갤런</li> <li>- 연간 200만 배럴 이상 생산업체는 0.581달러/갤런</li> </ul> </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맥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1,300kl 이하를 생산하는 제조자에 대하여 그해 생산한 200kl까지는 주세의 20% 경감(조세특별조치법 제87조의 6)</li> </ul> </li> </ul>
EU 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규정상 ① 맥주와 증류주 소규모 생산자 ② 알코올 15% 이하의 제품을 생산 하는 자에게 세금을 감면토록 되어 있으나, 회원국 사정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인 영세율: 독일, 오스트리아,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li> <li>- 세금감면: (독일) 연간 100kl이하 맥주생산자, (오스트리아) 소규모 증류주생산자</li> </ul> </li> </ul>

10 맥주는 미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델란드 등지에서, 그리고 증류주는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등에서 소규모 주류제조업체에 대해 차등과세를 하고 있음(성명재, 전게서. pp.76~83).

2004년 말 「주세법」 개정을 통해 이듬해 1월부터 500kl 이하의 소규모 농민 주중 과실주에 대해 200kl까지는 주세를 기존의 30%에서 각기 15%로 낮추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당시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주류를 생산하는 과실주 제조업자에 대해 주세를 감면함으로써 농산물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작 국산농산물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약주나 청주 등을 제외함으로써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한시라도 빨리 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규모이하 영세업체에게는 주세를 면세해 주고, 소규모 업체에게는 감세혜택을 부여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농민주나 민속주로 생산되는 발효주의 경우 10kl(증류주는 5kl)이하의 영세규모는 완전 면세하고, 100kl(증류주는 50kl)이하는 소규모업체로 부가가치 영세율을 적용하여 기존주세의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005년 주세 납부액은 민속주 910백만원, 농민주 7,475백만원으로 겨우 83억 8천5백만원(국세통계에 의하면 166억 4천9백만원으로 전체 주세의 0.71%)에 불과하다. 규모별로는 매출액 1~5천만원 규모의 업체가 납부하는 주세는 민속주가 평균 10.6백만원, 농민주가 9.5백만원 수준이며, 1천만원 미만 업체가 납부하는 주세는 민속주가 평균 2.8백만원, 농민주가 1.7백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주세 차등화에 의해 실제 줄어드는 재정수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 참조).

이밖에도 민속주 및 농민주의 경우 용기대금 및 포장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나 매월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제조업자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반기 신고로 완화해 주는 등의 세제상 지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5-4.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주세체계 개선안

구 분	영세규모 (면세)	소규모 (50% 감세)	중대규모 (100%과세)
저도주(약주, 청주, 과실주)	10kl미만	10~200kl	100kl이상
고도주(증류주, 리큐르 등)	5kl미만	5~50kl	50kl이상



## 5. 양조용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 구축

주류의 제조 원료는 농산물로 곡류, 과실류가 대부분인데 국산농산물은 양조에 적합하지 않거나 가격경쟁력이 낮아서 많은 양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맥주는 보리를 발아시킨 맥아(麥芽)를 주원료로 하는데 1988년까지는 100% 자급하였으나 최근 국내 보리 재배면적의 감소로 자급률이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 맥주맥은 연간 10만톤 정도 농협을 통해 구매 후 맥주회사에 배분하고 있으나 품질과 가격면에서 수입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 청주의 원료는 쌀로 이제까지 재고미(在庫米)나 변질미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위스키의 원료는 전량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정은 대부분 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조주정(알코올 85%이상)과 주정(알코올 95%이상), 타피오카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산 보리와 백미(MMA물량 포함)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2006년의 주정생산량은 150만 드럼으로 1992년에 비해 46.5%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원료사용은 절간고구마와 쌀이 각기 6.5%와 40.9%로 줄어든데 비해 조주정과 타피오카 사용량은 247.8% 및 226%로 늘어나 주정원료의 해외의존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정의 경우 「주세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에 의해 매년 주정원료의 구입량과 사용량을 책정하고, 국세청장은 주정업자에게 주정생산량과 소요 원료의 종별(種別)수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sup>11</sup>. 따라서 곡물과 고구마 등 국산농산물을 주정원료로 사용해 왔으나 수입산과의 가격차이 등으로 70년대 중반부터 타피오카와 조주정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 5년간에 걸쳐 주정 전량을 대체하겠다는 ‘보리주정원료계획’을 수립·추진하였으나 성공

11 국세청장은 농림부장관이 양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질 관리 또는 주류수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으며(「주세법」 제43조),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지정된 주류제조 원료를 주류의 수급사정, 제조장 분포상황, 제조능력 등을 참작하여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할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56조)

하지 못했다. 그 후 일관된 정책에 따라 주정원료수급계획이 수립·추진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정부가 개입함<sup>12</sup>으로써 마침내 주류소비와 국내 농업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sup>13</sup>.

표 5-5. 주정생산 및 원료사용 실태

구 분	1992(A)	1996	2000	2002	2006(B)	B/A(%)	
주정생산량(DM)	1,023,792	1,159,278	1,320,000	1,460,002	1,500,000	146.5	
원료 (MT)	생고구마	5,811	3,022	2,019	-	-	-
	절간고구마	36,115	4,561	2,901	4,807	2,336	6.5
	쌀 보 리	108,775	68,916	36,808	47,476	44,438	40.9
	겉 보 리	9,534	3,089	8,662	6,408	10,000	104.9
	국산옥수수	-	5,000	4,302	3,700	-	-
	백 미	144,000	-	-	160,487	207,160	143.9
	타피오카	51,054	187,164	266,172	114,374	115,404	226.0
	수입옥수수	-	57,691	-	-	-	-
	조주정(kℓ)	51,969	88,838	108,652	129,540	128,790	247.8
	수입주정(kℓ)	-	-	-	9,386	10,268	-
	수침양곡	653	쇄미 344 미분1,176	-	-	-	-
	일반증류주(kℓ)	-	참쌀 108	-	32	-	-

자료: 서현수, 전계서, p. 806 자료(2001) 재정리 및 국세청 내부자료, 2007

12 60년대 초 고구마원료를 이용한 주정 및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경감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였으나 고구마가격이 폭등하여 1974년 타피오카 칩을 대체주정(代替酒精)으로 수입하기 시작하였음. 1983~1988년 기간에는 외화절약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국산보리를 주정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보리주정원료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보리생산량의 감소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조주정의 수입만 늘어남

13 2001년 현재 자국산 원료사용비율을 보면 증류주는 일본이 47.7%를 자급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0.05%만 자급하고 있으며, 희석식소주의 수입원료 의존비율은 일본이 52.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9.94%나 된다(배상면, 전통민속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건의, 2004.3.5)

장기적으로 주류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주류원료수급증장기계획(안)’을 수립하여 주정 및 주류원료의 국산화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농림부에서는 주정원료로 쌀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쌀 생산정책과 연계 속에서 체계적인 수급계획을 수립, 중장기적으로 주류원료의 국산화를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류원료(양조)용 농산물의 품종육성과 머루·약용작물 등 새로운 작물의 재배기술을 개발 및 보급하고, 한약재 등 식품원료로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계약재배로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원료수매자금을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에 의해 ‘월 10톤 이상 소비하는 100m<sup>2</sup> 이상 시설면적을 가진’ 규모화 된 주정업체에만 공급하는 저가의 가공용 쌀을 대부분 영세한 규모인 민속주 및 농민주업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통민속주 협회’ 등을 통한 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규모업체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적극 해소할 필요가 있다. 물론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고유한 농산물로 민속주와 농민주를 생산하는 것이 지역농업의 발전이나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에 이들 업체가 지역농산물을 계약재배 할 때 그 사실을 표시하거나 원료가격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증류주 전매제도를 통해 증류주업체 및 농민들에게 원가 이상의 가격을 보상해 줌으로써 농산물소비 촉진과 안정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즉 감자와 과일 등 국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장주에게 제조면허를 부여하고, 증류권한도내에서 생산된 증류주에 대해 연간 300hl 이상이 아닌 경우 원가기준 보조가산금(100hl는 15%, 100~200hl는 10%, 200~300hl는 5%)을 책정하고 차액은 연방에서 보조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이 때 증류시설이 없는 원료생산 농민은 변제증류장시설을 이용하여 연간 50리터까지 증류를 허용해 주고 있다(정철, 선진국의 주류산업정책과 시사점, 2006). 이밖에 일본 농무성은 UR협상에 의해 최저수입의무량(MMA)으로 수입하는 쌀을 이용하여 향후 5년 내에 에탄올 5만kl를 생산할 계획을 발표하였다(헤럴드경제, 2006.11.27). 일본의 수입쌀 재고는 2006년 3월 기준, 203만톤인데 수입가격은 kg당 30

~60엔이다. 이를 에탄올로 만들어 가솔린가격으로 판매하려면 kg당 15~20엔에 팔아야 하는데 그 차액을 저장비(쌀 보관비용만 연간 217억엔)등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표 5-6. 외국의 주정생산 및 유통제도

	한 국	독 일	스 위 스	일 본
제조 면허	정부 제조면허	독점위원회로부터 제조면허	연방정부가 증류주 및 알코올의 제조권 보유	정부가 공업용알코올 제조권 전속(정부 제조면허)
생산 원료	제조업체의 연간 사용원료 배정	제조업체의 연간주정 생산량 지정(원재료는 독일에서 생산되어야 함)	국내에서 재배한 과일원료 사용(수입과일 사용금지)	공업용 알코올생산은 정부가 결정(조주정 수입시 일정량의 국산농산물 구매의무화)
판매 유통	생산된 주정은 대한 주정판매(주)에 판매하거나 주류제조자에게 직접 판매	모든 농산 주정은 독점위원회에 출하	연방알코올관리국에서 알코올에 대한 구입, 판매의 독점권보유	정부가 지정한 판매인에 의해 판매

자료: 이동필외,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2002

따라서 쌀과 보리, 고구마 등 국산 농산물의 주정원료 사용을 촉진하고 주정회사별로 독특한 주정생산을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주류원료 생산을 위한 제도정비와 지원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국산농산물을 주정으로 만들면 민속주 및 농민주의 다양화는 물론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최근 소규모 증류기의 개발로 영세업체도 참여할 수 있으며, 규모화가 필요하면 공동시설을 하거

14 단순히 계산하여 95% 알코올 주정 1드럼(200리터)는 276,674원으로 40% 알코올 기준으로 리터당 582원으로 환산됨. 쌀 442kg(약 995,500원)으로 40% 알코올 475리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우리 쌀로 만든 알코올은 리터당 2,096원으로 1,514원의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상업화하지 못하고 있음. 다만 잉여농산물 저장비용이나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리터당 2,500원 수준으로 수매할 수 있다면 쌀을 활용한 주정의 산업화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배상면, 농촌에 희망을 주는 대체에너지용 알코올생산방안, 2006)

나 기존 회사의 유희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농가에서 생산한 국산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증류가 가능하려면 주정 제조 및 유통규제(예: 제조허가를 위해서는 550kl 이상 주정발효조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 6.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홍보와 판매·촉진

민속주 및 농민주의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술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술들이 얼마나 맛있고, 건강에 얼마나 좋으며, 국민경제나 농가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술은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영세한 민속주 및 농민주업계의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판촉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속주 및 농민주 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판매실적이 줄어드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경영자금이나 전문인력 부족 등 경영여건 악화(50.0%)’와 함께 ‘홍보 및 판매촉진과 마케팅전략 미흡(46.1%)’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대담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통술의 우수성에 대한 홍보(36.0%)와 ‘홍보 및 판촉지원(53.2%)’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이를 통해서도 민속주 및 농민주의 홍보와 판매촉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싸구려 대중주와 저급 음주문화에 젖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만든 우리 민속주와 농민주가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림부는 민속주 및 농민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통술 페스티벌’ 및 ‘한국 전통식품 Best 5’ 등 이벤트를 개최하여 전통술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고, 특집방송·서울국제식품전시회·각 지역의 향토축제에 참여를 지원하여 간접적인 홍보를 해 왔다. 뿐만 아니라 ‘전통식품 Best 5’ 입상품 등 수출이

유망한 전통주는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해외바이어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해외시장에 대한 조사연구와 포장·용기 등 상품화 및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민속주 및 농민주의 실질적인 판로확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일회성 이벤트에 치우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외국에서는 지역축제나 품평회 등을 통해 전국의 지역특산주를 발굴하여 널리 홍보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주류종합연구소가 주관하는 ‘일본청주품평회(매년 4~5월)’는 1911년부터 시작되어 95회째 이어지고 있는데 해마다 1,000여 점이 출품되고 있으며, 이밖에 소주품평회(매년 6월중)와 양주·과실주품평회(매년 11~12월)가 열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술의 유래나 특징, 제조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상설박물관은 물론 현장에서 시음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전시판매장을 갖추고 있어서 관광문화상품으로써 주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민속주와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및 판촉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영세업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그동안 농림부가 추진해 온 ‘한국 전통식품 Best 5 선발대회’와 ‘전통술 페스티벌’ 등을 보다 체계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우리 전통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정례화 하고, 전국의 유명 향토 축제와 연계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식제고와 홍보 및 판촉을 통해 매출확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들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속주 및 농민주의 홍보와 판매촉진과 연계되도록 홍보용 팜플렛을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도시나 유명관광지 등 소비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민속주 및 농민주를 전시·판매하고 향토음식과 함께 전통술을 시음할 수 있는 주점을 겸한 갤러리 형태의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운영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경우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킨 한국 전통가공식품협회 전시판매장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의 수립과 사업타당성 검토,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인식제고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음식으로써 전통술의 가치를 알리고, 음주예절과 함께 ‘가양주문화(家釀酒文化)’를 널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나 전통식품명인이 운영하는 민속주나 지역특산주의 산지에 박물관을 건립하고, 전문가들로 하여금 주류의 유래와 특징, 제조방법은 물론 향음주례와 같은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정기적으로 품평회를 개최하고, 입상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국제박람회 참가와 외국어로 된 팜플렛 제작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수출국 현지바이어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실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전시 및 주요 언론과 유통업체 관계자 초청 홍보, 시음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류열풍으로 우리에게 쏠린 관심을 산업 활성화와 연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7.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소비자들은 술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맛(65.4%), 가격(38.9%), 알코올 도수(31.8%), 품질(17.6%), 브랜드(13.2%) 등을 중요시 한다. 하지만 양주에 비해 우리 민속주와 농민주는 맛과 향이 떨어지고, 가격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일반 대중주로는 많이 소비되지 않는다. 이는 우리 술의 구입목적 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선물용으로, 18.2%가 제사나 성묘용으로 구입하고, 자가소비용으로의 구입은 겨우 21.4%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이동필외, 전게서, 2005)에서도 알 수 있다.

소비자들이 민속주나 농민주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 외에 ‘뒷맛이 깨끗하지 않아서(44.9%)’, ‘맛이 없어서(31.7%)’, ‘도수가 높거나 낮아서(23.4%)’, ‘품질을 믿을 수 없어서(9.0%)’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즉 술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제품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민속

주 및 농민주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맛과 품질향상(45.5%)’, ‘다양한 상품개발(24.9%)’, ‘포장 및 디자인 개선(11.1%)’이 민속주의 대중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로 제시되었다.

먼저 민속주와 농민주의 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주류규격 및 원료사용과 제조방법에 대한 규제완화와 전통민속주의 재현 및 지역특산주의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주류종합연구소나 프랑스의 파스티르연구소처럼 발효와 양조, 미생물 등 기초 연구는 물론 양조용 원료의 품종개발이나 재배·육종 및 수확 후 관리 등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연구를 담당하는 ‘(가칭)종합주류연구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고창복분자나 진도홍주·한산소곡주·안동소주·전주이강주 등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회나 단체,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등이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과학적 근거 위에 전통술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종합주류연구소’의 경우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농진청에서 구상중인 주류연구소 기능을 통합하여 그야말로 일본의 ‘주류종합연구소’와 같은 종합적인 주류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나 주종별로 별도의 전문연구소를 운영할 수도 있다. 다만 이들 연구소는 주질 향상과 시장개척, 포장 및 디자인개선 등에 대한 연구개발 뿐만 아니라 주류업체에 대한 기술 및 경영에 관한 교육과 훈련기능도 담당하도록 하고 이 때 소요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전통식품명인 중 주류분야의 명인도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음식(술)분야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와 같은 전수교육을 지원받아야 한다. 정부는 기능보유자에게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의 기본경비로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급·선양, 교육,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있다<sup>15</sup>(문화재관리청, 2007 전수활동지원방침). 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15 지원내역에는 월정 전승지원금(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월 100만원, 전수교육 조교



전통식품제조기능보유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운용하는 전통식품명인의 경우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2007년 2월 현재 28명(그중 주류분야 20명)이 지정 받았다. 주류분야는 중요무형문화재와 같이 민속주로 취급받고 있으나 ‘전통식품명인’이란 명칭만 사용할 뿐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기능전수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및 훈련에 활용한다면 민속주 및 농민주의 주질 향상과 신제품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8. 민속주 및 농민주의 품질관리와 표시제도 정비

소비자들이 민속주와 농민주 소비를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품질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분자주의 경우 당초 리큐르형태로 출하되었지만 그 후 과실주와 탁주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면서 원료의 종류와 함량, 제조방법은 물론 숙성기간, 알코올 도수 등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어떤 종류의 술인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품질기준과 표시내용이 확립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결국 매출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더구나 민속주와 농민주의 경우 대부분 영세업체로 노후화 된 시설에서 가내수공업적으로 생산하고 있어서 생산효율이 낮고 위생관리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

주류는 쉽게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청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량생산으로 소비자들에게 널리 보급되면서 위생과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류도 식품의 일종인 만큼 소비자들의 건강과 위생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식품

---

월 50만원), 보유자가 없는 보유단체 월 300만원의 특별지원, 장례보조금(보유자 100만원, 교육조교 50만원) 및 입원위로금(연 1회, 10일 이상 입원시 보유자 50만원, 조교 25만원), 그리고 해당 문화재를 일반에 공개하거나 기획 및 해외전시, 지역 축제 시연 등 선양활동에 필요한 경비(연간 200~300만원 수준) 등이 포함됨

위생법』에 준해 생산 및 유통과정을 재정비해야 하며<sup>16</sup>, 영세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표 5-7. 원산지호칭일본주 및 전통적 원산지호칭일본주 비교

원산지호칭일본주(SOC)	전통적 원산지호칭일본주(TSOC)
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역명을 사용할 것 ② 국내산 쌀을 사용할 것 ③ 인정지역 물을 사용할 것 ④ 양조알코올, 당류, 산미료 첨가가 없을 것 ⑤ 인정지역 내에서 양조, 저장을 거쳐 상품화된 것 *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을 원산지호칭일본주라고 함	① SOC명칭과 다르고, 인지되고 있는 역사적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것 ② 인정지역 주변내 산지의 쌀 및 물을 사용 ③ 인정지역 내에서의 양조, 저장을 거쳐 상품화 한 것 ④ 양조알코올, 당류, 산미료 첨가가 없을 것 ⑤ 효소제에 의한 당화를 하지 않을 것 ⑥ 액화 빚음을 하지 않은 것 *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을 전통적원산지호칭일본주라 함

#### SOC 기본관리방법

##### \* 원재료 관리기준

- 쌀 : 구입명세서(생산지 명시한 것)
- 물 : 수질검사서(각 도·도·부·현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검사서)
- 제조방법 및 제조량, 술찌게미경과표, 일본주이동경로도(탱크내), 상품검사, 지역SOC 위원회의 현장검사, 샘플 자발적 제출
- 모든 항목에 대해 자발적 신고를 기본으로 하지만 정기적으로 SOC위원이 현장검사

16 주류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 「유럽연합명령(Directive CE) N°93-43, 1993년 6월 14일」과 「프랑스행정명령(Arrêté) 1997년 5월 28일」에 의하면 포도주제조업자에 대하여 ① 위생안전을 충실하게 이행한 증거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생산자의 직접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② 식품위생을 시행하는 작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의무화하며, ③ HACCP(Hazard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의 실천<sup>1)</sup>을 적극 권장하고 있음

또한 상품의 품질을 표준화, 등급화하여 차별적인 유통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포도주의 경우 지역의 토질과 경사도·강우량·기후 등 지리적 조건에 의해 지역 및 필지별로 구분하여 특정품종의 포도를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생산한 포도주를 등급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면 수입포도주와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다<sup>17</sup>. 일본청주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된 고유한 쌀과 지역의 물, 제조방법 등으로 지역특산품화 한 청주를 차별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일본주원산지호칭제도(SOC: Sake’s Origin Control)’와 이를 더욱 강화한 ‘전통적원산지호칭제도(Traditional Sake’s Origin Control)’를 운영하고 있다<sup>18</sup>. 우리나라도 과실주나 약주·증류주·리큐르 등 민속주와 농민주 중 지역별로 특화된 상품에 대해서는 제조방법과 원료 등을 기초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생산자 스스로가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 차별적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류상품에 표시하는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주세법시행규칙」 제7조 별표(주류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의하면 ① 제조장의 명칭과 위치, ② 주류의 종류, ③ 규격(알코올성분), ④ 용량, ⑤ 용기주입 연월일, ⑥ 원료용 주류 및 첨가물료의 명칭과 함량, ⑦ 세금포함 출고가격, ⑧ 상표명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시 내용은 소비자들이 주류의 품질과 관련된 특성을 파악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17 일반적으로 포도주의 품질은 원료로 사용한 포도의 품종과 재배방법, 재배지역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프랑스에서는 테이블용포도주(vins de table), 지방특산포도주(vins de pays), AO-VDQS(vins delimites de qualite superieure), AOC(appellation d’origine controlee)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에서 각기 고유한 법령에 의해 원료와 제조방법을 규정하고, 지역명칭을 관리하는 지역특산주만 590개(vin de pays 140개, AOC 450개)나 됨

18 이들 원산지호칭일본주와 일반일본주의 차이는 ① 원료가 되는 쌀은 물론 물, 양조법, 저장까지 일관된 엄격한 기준을 정해 항상 안정된 품질을 약속한다는 점과 ② 애매한 향기 및 맛을 다양한 각도에서 철저히 분석해 수치화하는 것에 성공하여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 향기와 맛을 보증한다는 점, ③ 몇몇 사람으로부터 전해오는 전통산업과 계승된 기법들을 보존하는 등 역사를 존중한다는 점, ④ 향토요리에 그 지역 술이 맞듯이 요리와 함께 육성된 술 문화를 존중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제공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포도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① 포도의 생산연도, ② 포도의 품종, ③ 포도재배국가와 지역, ④ 제품명, ⑤ 와인등급, ⑥ 와인생산회사를 표시하는데 포도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재배지역, 품질등급에 관한 정보 없이 포도주를 선택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라벨 등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에 품질관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원료의 종류와 산지·효능·제조방법·지역명 등을 포함해야 한다.

특히 주류의 원산지 표시는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고시 제2000-9호 및 33호)」에 의해 “국내외 원산지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문자 또는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에 의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주류는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여타의 농산물가공품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서둘러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민속주 및 농민주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인 건강에 유용한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종 생약재의 원료사용 범위 확대와 함께 이들 생약재의 효능을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식품공전」 및 「건강기능성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인삼제품과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으로 등록된 식품을 제외하고는 식품에 효능(유효성과 용도)을 표시하는 것을 ‘허위·과대광고’로 간주하여 약주의 효능 등 상품의 특성이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생약재 등 과학적으로 인정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원·부자재를 사용한 주류의 효능을 표기할 수 있도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유용성이나 효능이 인정된 주류에 대해서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9. 「민속주및농민주산업육성법」의 제정과 지원·관리체계 정비

최근들어 민속주와 농민주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와 농림부 등의 지원으로 민속주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들 영세업체를 육성하여 고급 특산주를 생산하고, 이로 인해 농산물소비 촉진과 농가소득 증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농촌관광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수입대체와 수출증가를 통한 외화획득이 가능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개방화란 시대적 흐름을 거슬리기 어려운 만큼 WTO 등 국제적 규범에 순응하면서도 「주세법」과 같은 주류정책의 골간을 건드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민속주와 농민주를 산업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유치산업의 육성과 영세업체의 보호·육성, 향토음식 문화의 보존과 계승발전이란 차원에서 「민속주및농민주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방치되고 있는 민속주 및 농민주의 지정과 지원, 사후관리를 체계화하여 실제 이들이 산업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육성시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동안도 민속주와 농민주산업 육성을 위해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별도의 제조허가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도소매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특정주류도매업의 제도화, 그리고 일정규모 이하의 과실주에 대해 주세감면 등의 특혜를 부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주세법」에 기초한 규제행정의 토대위에 임시방편적이고 예외적인 접근으로는 산업 활성화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세법시행령」 제9조는 특정주류도매업을 규정하면서 농민주와 민속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이는 특정주류도매업 면허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주세법」상 민속주 및 농민주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가 사실상 취약하다. 특히 농민주의 경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4조와 「농업인 등·생산자단체 및 민속주명인에 대한 주류제조면허추천요령(농림부고시 2003-9)」을 통해 추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모법인 「주세법」에서 이

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더구나 추천의 우선순위나 사후관리 등에 대해 국세청과 업무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체계적인 지정, 지원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sup>19</sup>.

『민속주및농민주산업육성법』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들 주류의 특성상 원료의 종류나 함량, 제조 및 숙성방법 등이 품질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주세법』으로는 주류의 종류별 규격, 제한하는 첨가물의 종류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다양한 민속주와 농민주의 품질을 차별화하기 어렵다. 프랑스의 와인이나 일본의 청주산업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한 원료의 종류와 제조방법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곧 차별화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세밀한 품질표시 기준과 관리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고창군은 지역에 특화된 복분자를 지리적표시대상으로 등록하고,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추천의뢰가 쇄도하자 추천대상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단위에서 복분자주의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 『고창군복분자주향토산업조례』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속주 및 농민주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술과 관련된 중앙행정부서에는 농림부를 비롯하여 재경부와 국세청,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있다. 현재 이들 부처는 민속주나 농민주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이나 계획없이 부처의 업무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계의 실태와 문제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이에 반해 프랑스나 독일·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포도주와 증류주산업 육성업무를 농업관련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주류를 식품 중의 한 품목으로 규정하고 ‘농산물 가공’이란 점에서 주류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 예를 들어 2007년 3월 현재 농림부는 시·군을 통해 접수받은 430개 업체를 농민주 면허 대상으로 추천하였으나 정작 몇 개 업체가 면허를 받았는지 파악할 수 없으며, 면허취득 후 이들 농민주업체가 실제 50% 이상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현실임

표 5-8. 선진국의 주류 관련제도 및 추진체계

구 분	대한민국	프랑스	독 일	영 국
담당부서	재경부 국세청	농수산식량원예국	농림식품부 식품국	농촌식량농촌부 식품음료유통국
모 법	없음	EU증류주법(1989), EU포도주법(1962)		
주류법률	주세법	음료 및 주류에 관한 도량형법	식품법, 포도주법, 증류주 판매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법, 포도 주법, 도량형법
제조특징	주류, 주정량을 정부가 규제	EU포도주법에 의해 고시된 포도재배지역 내 농가만이 관계기관에 등록후 포도재배		
제조허가	국세청 허가	재무당국에 등록 또는 신고		
주류의 성 격	청소년유해약 물로 규정	주류를 식품 중의 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잉여농산물 가 공이란 점에서 주류산업 육성		
생산자협회 육성	-	주종별 품목협회가 조직되어 품질검사, 품질보증표시, 공 장검사 등을 자율적으로 규제		
제조판매 자율성	제조 및 판매 규제	EU에서 정하는 포도주생산할당량에 의해 포도재배면적 규제	정부는 생산자협회만 지도감독(주류제조는 자유경쟁)	
정부지원	주류공업협회 보조	직접 : 포도주 생산 장려를 위해 포도주생산협회에서 지원 간접: 소비세 환원으로 간접지원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통술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의 내용을 조정·보완하여<sup>20</sup> 「민속주및농민주산업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여러 부처에 흩어져 방치되고 있는 농민주 및 민속주 사후관리를 체계화하고, 실제 이들이 산업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육성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농림부는 전통식품육성과 농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란 차원에서 주정 및

20 기존의 법률안은 법제정의 필요성, 전통주에 대한 개념상의 혼란, 전통술의 면허 및 추천 등 일부조항의 「주세법」과의 상충, 생산자단체와 연구지원 등 중복성문제 등으로 계류 중임

주류원료의 수급계획을 포함한 ‘민속주및농민주산업육성종합계획(안)’을 수립하여 원료조달에서부터 연구개발과 가공 및 유통·수출입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류관련 산업 정책 지원 및 육성 기능은 농림부로 이관하더라도 주세징수 업무는 국세청, 보건위생문제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청)가 각기 분담해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주종별로 협회를 결성하여 사업자 스스로가 연구개발이나 품질관리, 시장개척 등의 산업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필요악(必要惡)’이라고도 불리는 주류의 특성상 정부가 직접 양조업체를 지원,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때문에 프랑스·독일·영국 등 유럽국가에서는 주종별 품목협회를 통해 품질검사, 품질보증표시, 공장검사 등 품질관리는 물론 연구개발과 홍보 및 판매촉진 등을 양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sup>21</sup>. 우리나라도 약주나 청주, 혹은 과실주와 같이 주종별로 생산자와 가공·유통·수출입에 관련된 사업자들이 협회를 조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품질개선과 새로운 상품개발, 품질기준 설정 및 관리, 공동 원부자재 구입, 홍보와 판매 촉진을 통해 문제 해결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때 주류의 품질관리와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서는 정부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자료의 수집이나 시장조사, 연구개발이나 홍보 및 판촉, 마케팅 활동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 프랑스 보르도포도주협회(CIVB)는 1918년 설립된 ‘보르도포도주 유통 및 제조연합’에서 출발하였는데 주요 활동으로는 ①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② 판매점 통제를 통한 품질관리, ③ 수출용 포도주의 품질관리, ④ 정보의 수집분석, 고급포도주의 수요와 명성, ⑤ 자료센터를 통해 지역정보 발간 배포, ⑥ 각종의 유관자료를 수집·관리하여 언론사, 소비자단체 및 지역사회단체들과의 유대강화, ⑦ 보르도 시내 및 호텔에서 정보지원 및 접견실을 상설시음장소로 관리 운영, ⑧ 접견실 이외의 포도주회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 제 6 장

### 맺는말

민속주 및 농민주는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전통적인 제조방법으로 만든 우리 체질에 맞는 술이다. ‘우리 입맛에 맞는 좋은 우리 술’의 소비를 통한 국민건강 유지와 고용창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입주류의 대체와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저렴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과 보리, 과일 등의 소비촉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역의 고유한 향토음식문화는 지역축제 등과의 결합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란 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좋은 자연환경과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다양한 전통민속주가 발전하였다. 하지만 1907년 「주세령」이 공포된 이래 주류의 종류와 규모를 제한하는가 하면 자가양조(自家釀造)를 전면 금지함으로써 대부분의 전통민속주가 사라지게 되었다. 더구나 1965년부터는 주류원료로 양곡사용을 금지하고, 엄격한 밀주단속으로 주류산업을 몇몇 대기업이 독과점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올림픽을 계기로 1986년 민속주기능보유자를 무형문화재와 관광토속주로 지정하면서 부활의 싹을 틔우게 되었다.

민속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정책화한 것은 1993년 농림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민속주와 농민주 제조를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이다. 사실 이

때까지만 해도 주류제조 면허를 엄격히 관리하였기 때문에 농림부장관의 추천으로 비교적 쉽게 주류제조 면허를 받는 것은 상당한 이권(利權)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농민주 및 민속주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체 수가 늘어나면서 주류의 제조 및 유통 허가는 물론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산업활동을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에 대한 민원이 높아지면서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주류분야 규제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민속주 및 농민주 면허를 받은 사업체 수는 2005년 말 현재 232개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민속주 및 농민주업체가 영세하여 이들이 전체 주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고량의 0.32%, 납세액의 0.71%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최근 한·칠레 및 한·미 FTA의 체결로 와인 등 주류수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과연 우리 농산물로는 좋은 술을 만들 수 없는가?” 하는 반성과 함께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술이 곧 ‘식품산업의 꽃’이라는 점에서 최근 농정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식품산업의 육성이란 관점에서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세법』의 개정과 식품산업 육성 차원에서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의 추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및 추진체계 정비의 세 가지 과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주세법』과 관련해서는 먼저 민속주 및 농민주의 제조면허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제조방법과 원료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규모의 영세성으로 대리점이나 직매장을 개설하기 어려운 민속주 및 농민주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편판매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 농가민박 등에서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로 술을 빚어 손님을 접대하거나 선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제도개선의 핵심적인 내용은 소규모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해 주세를 차등화 하는 것이다. 매출액이 연간 1천만원도 안 되는 30%의 영세업체들이 대기

업과 같은 높은 세금을 내고서는 도저히 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민속주 및 농민주 업체에게는 면세혜택을 주고, 중·소규모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자는 것이다. 일부 세무당국자는 WTO 내국인대우규정 위반 가능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이는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실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지난 2005년 1월부터 농민주 형태로 생산되는 과실주는 200kl 까지 주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 만큼 유독 쌀이나 기타 농산물로 만든 술에 대해서만 제도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주류면허를 받고 다양한 술을 생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이 낮은 민속주 및 농민주사업체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홍보·판촉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에게 양조에 적합한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거나 체계적인 홍보 및 판매촉진, 그리고 연구개발과 교육훈련을 확대하는 데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림부가 해야 할 과제를 보면 ‘주류원료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양조용 원료농산물을 개발한다든지, 계약재배를 촉진하는 것부터 공익차원의 홍보를 위해 품평회 등 각종 이벤트행사를 개최하거나 전시판매장 건설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제품개발이나 디자인 개선, 주질 향상 등을 위해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개별업체가 해야 할 과제도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상품의 맛과 품질을 개선하고, 좋은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품질 좋은 술을 만들고, 홍보 및 판촉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타의 농산물가공업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민속주 및 농민주업체는 규모가 영세하고 판로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자부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행 「농산물가공업육성법」 제5조에 의하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및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주류제조면허 추천업체를 포함한 농산물가공업체에 대해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담보능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숙성을 요하는 주류산업의 특성상 문제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양조설비나 원료의 안정적 확보, 포장 및 디자인 개발 등 지원 대상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확대하고, 주류산업의 특성에 맞게 지원조건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자연환경, 독특한 원료농산물과 물, 그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양조방법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고유한 지역특산주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연구개발과 특수원료의 계약재배, 공동브랜드화, 품질관리, 홍보 및 판매촉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세를 인하하고, 농림부가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에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이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소비자들이 민속주와 농민주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품질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인데, 현행 「주세법」으로는 주류의 품질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복분자주의 경우 당초 리큐르형태로 출고되었지만 그 후 과실주와 탁주 등 다양한 제품이 경쟁적으로 출시되면서 원료의 종류와 함량, 제조방법은 물론 숙성기간, 알코올 도수 등이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어떤 종류의 술인지 파악하는 데 필요한 품질기준과 내용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더구나 기존의 민속주 및 농민주 추천제도 하에서는 산업육성에 책임이 있는 농림부의 경우 추천만 하고 나면 그 업체가 제조면허를 받았는지조차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관리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속주및농민주산업육성법(가칭)」을 제정하고, 민속주 및 농민주에 대한 지정·지원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프랑스 와인이나 일본 청주와 같이 발전하려면 사용한 원료의 종류와 제조방법을 구체화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정, 나름대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민속주 및 농민주를 산업적으로 육성하려면 품질향상과 새로운 주류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하에서 연구개발과 교육훈련, 홍보 및 판매촉진, 시설현대화와 포장개선, 원료

의 안정적 조달 등 정책을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육성법은 이를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류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부서에는 농림부를 비롯하여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보건복지부, 농촌진흥청 등 여러 부처가 있다. 현재 이들 부처는 민속주나 농민주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이나 계획 없이 부처의 업무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너지효과는 고사하고 중복관리에 따른 낭비와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통술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의 내용을 조정·보완하여 「민속주및농민주산업육성법」을 제정함으로써 농림부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에 흩어져 방치되고 있는 농민주 및 민속주의 지정·지원 및 사후관리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그동안 농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해 오던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골격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관련 산업의 실태와 문제 등에 대한 실증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00년간 징세편의를 위한 규제위주의 주류제도를 산업정책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참고 문헌

- 강신일. 1988. “주류산업에 대한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 제10권 3호, 한국개발연구원.
- 고창균. 2002. 『복분자주 세계적인 브랜드화: 세계명주까지 100년계획』. 규제개혁위원회. 1998. 『주류분야규제개혁방안』.
- \_\_\_\_\_. 2007.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관련 규제의 완화』
- 김완배. 2007. 『한국과 일본의 주류산업 비교』. 서울대학교.
- 농림부·농수산물유통공사. 2006. 『농산물가공공장 현황』.
- \_\_\_\_\_. 2006. 『전통술산업 육성대책』.
- \_\_\_\_\_. 2007. 『전통식품명인지정제도』.
- 문화재관리청. 2007. 『2007년도 보유자전수교육조교 전승활동 지원방침』.
- 배상면. 2006. “농촌에 희망을 주는 대체에너지용 알코올생산방안.”
- \_\_\_\_\_. 2004. 『전통민속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건의』.
- 서현수. 2001.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 경영과 회계』.
- \_\_\_\_\_. 2007. “전통술 일반현황 및 지원 실적.” 농어업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보고.
- 서희열. 2001. “주류판매업 면허제도 개선 방안.”
- 성명재. 1999. “주류유통·판매관련 규제정책의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 이동필. 1994. 『전통민속주산업의 육성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 2000. 『지식기반사회 구현을 위한 농촌부분 규제개혁』. 국무조정실.
- 이동필 외. 2002.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동필 외. 2005. 『농민주 및 민속주산업 발전방안과 개발모델』, 농림부.
- 이동필. 2006. 『농민주 및 민속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방안. 전통술산업의 현황과 육성방안세미나』. 강기갑의원실.
- 이동필. 2006. “전통우리술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식품영양과학회.
- 이상배. 2005. 『전통민속주산업육성법안』.
- 일본 주류총합연구소. 2006. 『구조개혁특구에 있어서 탁주제조 면허의 입문』.
- 정 철. 2006. “선진국 주류산업정책과 시사점.” 우리술산업활성화 토론회.
- 정현배. 2002. “선진국의 주류생산 및 유통관련 제도와 시사점.”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주류산업활성화방안세미나.
- 지일선. 1996. “우리나라 주류제조 현황과 제품개발 과제(I)·(II).” 『주류공업』.
- 차홍기. 1996. “주정원료 수급 및 향후 전망.” 『주류산업』.
- 최명규. 2001. “주류산업에 대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 『주류산업』.

---

정책연구보고 P92

민속주 및 농민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07. 11.

발 행 2007. 11.

발행인 최정섭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 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11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http://www.chol.com>

---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